

월·간

#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모색

## 재정동향

1990년대 일본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 특별기획

고 정영헌 박사의 연구업적을 기리며

##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의 조세제도(1)

## 공과금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외

## 재정통계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외

#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관성의 법칙'을 경계한다 / 姜應善
현안분석	6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 孫元翼
	23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 韓相國
	36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모색 / 李哲印
재정동향	62	1990년대 일본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 金映喆 · 朴宗奎
명언산책	82	소비의 이론을 위해서
특별기획	83	고 정영헌 박사의 연구업적을 기리며 / 玄鎭權
주요국의 조세제도	89	영국의 조세제도(1) / 李哲印
경제단상	97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 / 朴哲秀
	100	슈퍼우먼 콤플렉스 벗어나기 / 김윤경
인물탐험	102	신리의 승려, 혜초 / 李 濬
정책흐름	107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112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116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1999년 귀속
	125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129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133	국세·지방세의 배분 추이
	134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40	추경예산 꼭 편성해야 하나 외

# ‘관성의 법칙’을 경계한다

姜應善 /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때** 마침 외환위기 이후 3년제에 접어들어 우리 경제를 두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소위 IMF 3년차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간단하다. 1997년 12월 이후 근 2년간 공들여 온 경제개혁 노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곳곳에서 피로 및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3년차 증후군이 양성(陽性)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의 증상이 몇 군데서 발견되곤 하는데 이를 덮어댈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건강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동향이 그렇고 국제수지나 물가수준 등 일부 거시경제 지표 또한 비정상이거나 기대치 이하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 증상의 공통적인 원인을 보면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증상을 말한다. 그것은 경제 3주체별로 증상의 정도를 진단해 볼 수도 있다. 또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경제개혁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후자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관성의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지도 모른다. 이것도 제도적 측면에서 그런 증



상이 야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태적인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지만 행태적 요인이 강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다.

제일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 기업개혁에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관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한달여 전에 일어났던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년 동안 정부와 재계

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정·재계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소위 '5+3'의 원칙하에 기업개혁을 도모해 왔는데 이런 많은 노력과 개혁의 성과가 한순간에 의심을 받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2년 사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회계원칙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막상 이것이 현실에서 실증되지 못하게 되어버린 꼴이다. 아마 이를 두고 재계 안에서도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정부나 일반 국민이 이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달성했다고 알려졌지만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200%를 넘는 기업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간의 기업개혁을 의심케 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두고 기업개혁에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는 빌미를 주기 전에 재계 스스로가 충실한 개혁 성과를 보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의 증상이 몇 군데서 발견되곤 하는데 이를 덮어댈서는 안 될 것이다. 벤처에의 기대, 첨단산업에의 투자,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등도 좋지만 우리의 의식과 행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나 않는지를 지금 바로 점검해 볼 때다.**

여주어야 할 일이다.

금융개혁은 이미 2차 구조조정 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더 명백한 예라고 하겠다. 1998년 8월에 5개 은행의 퇴출까지 단행하면서 대수술을 했지만 그 후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등 몇몇 금융기관에서 보여준 행태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은 20~4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적자금이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만 셈이다. 물론 투신의 부실이나 대우사태로 인한 전 금융권의 피해 등이 이미 예상된 것인만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명이 되겠으나 전체적으로 금융 운영의 행태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사이버 대출이나 지점 통폐합이니 해서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금융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을 두고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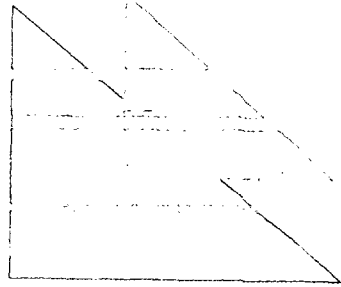
공공개혁에 있어서 관성은 어떤가. 정부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공공개혁을 논할 때마다 기업이나 금융개혁에 비해 훨씬 개혁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평가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독과점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적인 신분보장이 강하기도 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부문에 비해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마져 어렵게 될 것 같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됨으로써 2년 동안 개혁을 요구하던 외부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게 그 주된 이유이며 나아가 4·13 총선의 결과로 정부·여당이 강력한 개혁을 추구하려고 해도 정치 구조상 어렵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매각 또한 원래가 가뜩이나 어려운 주제인 데다가 이젠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혈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것 같

고, 그렇지 않고 외국에 매각되면 국부 유출 시비로 이래저래 어렵게 됐다.

마지막으로 노사부문을 어떤가. 그 동안 제1,2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성과라고 한다면 이나마도 올해부터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이 또한 공공개혁처럼 외부 여건이 변했다는 데에서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간단한 예로서 올해 임금인상을 앞두고 노사간에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단치 않을 것이며 타결과정에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집단시위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제도적 틀마저 관성에 의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정된 노동법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이 아직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이미 개정 논의가 되고 있음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특히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재계·노동계 대표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이 정도 예만 들어도 우리 경제 주변에 어떤 어려움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가를 대강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은 제도적으로 잘 갖추었음에도 현실은 거꾸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아예 그동안의 개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음이 바로 그렇다. 멕시코는 '3년차 증후군'의 여파로 인해 결국 1994년에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맞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국제적 망신을 또 당해야 되겠는가. 벤처에의 기대, 첨단산업에의 투자,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등도 좋지만 우리의 의식과 행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나 않는지를 지금 바로 점검해 볼 때다. **김기**

# 현안분석



## 1.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孫元翼 연구위원

## 2.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韓相國 연구위원

## 3.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모색

李哲印 전문연구위원

# 공익법인 관련 세제의 현황



孫元翼 연구위원(wson@kipf.re.kr)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공익성 강화,  
지주회사화 방지  
응용소득의 사후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 1. 서론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법은 1996년 개정시 지주회사화 방지, 운영의 투명성 및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되었다.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하여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를 5% 이내로 의무화하였고, 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비율별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5% 초과, 20% 이하분에 대해서는 3년, 20% 초과분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초과주식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는 자산총액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세무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수익용 재산의 5%, 발생소득의 50% 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 중 수익용 재산의 5% 기준을 폐지하고 발생소득의 50%만으로 함으로써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1999년 개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취임 기준을 재도입하였고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하여 동일종목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도 강화하였다. 운용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익목적 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확인 대상을 총자산 50억원인 법인에서 30억원인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및 기준금액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 관련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으로써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개정되어 온 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본다.

**1998년 현재**  
공익법인의 수는 5,221개,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이 3,912개이며,  
출연재산 없는 법인이 1,309개에 이르고 있다.

## II. 공익법인 현황

1988년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법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법인 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a)영리법인	47,581	56,068	67,320	80,837	92,200	101,933	114,363	130,597	148,112	166,741	169,018
(b)비영리법인	9,034	9,156	9,318	9,716	9,936	10,329	11,050	11,487	11,959	12,575	12,817
(c)총계	56,615	65,224	76,638	90,553	102,136	112,262	125,413	142,084	160,071	179,316	181,835
(a) / (c)	84	86	87.8	89.3	90.3	90.8	91.2	91.9	92.5	93.0	93.0
(b) / (c)	16	14	12.2	10.7	9.7	9.2	8.8	8.1	7.5	7.0	7.0

주: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있는 사단, 재단 등과 공공법인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98년 현재 공익법인의 수는 5,221개,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이 3,912개(74.9%)이며, 출연재산 없는 법인이 1,309개(52.1%)에 이르고 있다.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장학·학술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학교, 사회복지 순으로 각각 27.6%, 22.3%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어 가면서 비영리 분야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사에서 설립한 기업재단은 총 84개이며 연도별 설립 현황은 <표 3>과 같다. 전체 기업재단 중 35.5%가 1980년대에, 27.3%가

기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되어  
가면서 비영리 분야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표 2〉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

	계	출연재산 없는 공익 법인	출연재산 있는 공익법인						
			소계	학교	학술·장 학·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기타
1994	4,230	983	3,247	1,058 (32.6)	953 (29.4)	703 (21.7)	176 (5.4)	187 (5.8)	170 (5.2)
1996	4,624	938	3,686	1,079 (29.3)	1,114 (30.2)	808 (21.9)	237 (6.4)	215 (5.8)	233 (6.3)
1998	5,221	1,309	3,912	1,081 (27.6)	1,204 (30.8)	872 (22.3)	276 (7.1)	189 (4.8)	290 (7.4)

주: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있는 사단, 재단 등과 공공법인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7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 재단의 설립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던 197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말을 기준으로 주무관청별로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 관할하의 재단이 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21%, 문화체육부 7%, 공보처 4% 순으로 나타나, 기업재단의 활동이 장  
학·학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설립연도별 재단 현황(1997년)

(단위: 개, %)

설립연도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 이후	계
재단수	3	6	23	30	22	84
비율	3.5	7.6	27.3	35.5	26.1	100

자료: 전경련, 「기업사회공헌백서」, 1998.

〈표 4〉 주무관청별 재단 현황(1997년)

(단위: 개, %)

주무관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계
재단수	57	18	6	3	84
비율	67.8	21.4	7.2	3.6	100

자료: 전경련, 「기업사회공헌백서」, 1998.

### III. 공익법인 관련세제

#### 1. 공익법인의 범위

세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 및 그와 비슷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말한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세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상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단, 상속세를 면제받은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는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수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5%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

#### 1) 법인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소득금액 등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이자소득

금액등이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2조).

## 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토지 등을 출연한 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140조 제3항). 단,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거나, 1년 이상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과 양도소득 특례신고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03조, 제104조).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이며 양도소득 특례신고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면제하는 방법이다(법인세법 제103조 제2항).

사립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한국보훈복지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영리법인의 신고방법과 양도소득 특례신고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가. 출연재산 사후관리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공익목적사업 등이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으로 출연받은 것은 출연재산 자체가 수익사업용재산에 해당되므로 출연시부터 수익사업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예외로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등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내 미사용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나. 출연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의미한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의사, 고아원·탁아소의 모모, 도서관의 사서, 학교의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에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이 매각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 중 그 미달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37조 제4호).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2항<sup>1)</sup>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소득계산 방법<sup>2)</sup>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함)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금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 중 그 미달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라. 주식취득보유에 대한 사후관리**

**1)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일 현재 5%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임.

-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⑥ 상기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순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4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3)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은 1990년 12월 31일과 1993년 12월 31일 상속세법 개정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하였으므로 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6년 12월 31일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내에, 5% 초과 2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마.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바.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2호).

**사.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연재산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의 의무****가.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연재산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불분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과세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후 10년간 비치하여야 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불이행시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1996년 12월 31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출연자 1인당 출연가액이 전체 출연가액의 5% 미만인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외부전문가가 확인할 사항은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공익법인의  
범위 조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IV. 1999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 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가.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1999. 1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7항)

199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단,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음). 특별한 관계 있는 자의 이사 수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1/3로 제한해 오다가 1994년부터 1/5로 완화하였다. 동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6년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1999년 세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에의 예속 방지를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및 고용을 이사 현원의 1/5로 제한하고 상기 규정 위반시 1/5 초과 이사 등에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에서 이사와 관련된 경비란 급여 및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 즉 의사, 교사,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등으로 고용될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동 제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나.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1999. 1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제78조 제8항)

공익법인을 통하여 출연자 및 그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 수행시 팜플렛 등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광고·홍보매

체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행사시 팜플렛·입장권·기념품 등을 이용한 경우는 당해 행사비용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다. 공익법인의 범위 조정(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시행령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술·문화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였고 이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해  
동일종목 주식보유한도를  
강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하였다.**

## 2.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 가. 동일종목 주식보유한도 강화(수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제49조, 제78조 제4항)

재벌들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 총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초과 출연주식의 계산은 매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비율계산시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의 가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계산한다.

1993년 상속·증여세 면제범위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0%에서 5%로 대폭 축소하였고 1990년 12월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 초과분까지, 1993년 12월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었다.

또한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출연한 주식 및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외에 당해 출연자가 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당해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5% 초과여부를 판정하도록 명백히 하였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운용소득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식 및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외에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

**성실공익법인이란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 이상 중  
큰 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법인을 말한다.**

는 주식을 합산하여 5% 초과여부를 판정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완하였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5% 이내로 축소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는 것이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식을 분산소유하면 그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 낮아지게 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보유분에 대해서는 5% 초과 20% 이하는 3년, 20% 초과분은 5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의무 위반시에는 1회에 한해 5% 초과주식가액(액면가)의 20%에 상당하는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즉, 성실공익법인이란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의 80% 이상 중 큰 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법인을 말한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일에 3년간 또는 5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평균액을 통산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매년 판정하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포함)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과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도 포함한다.

〈표 5〉 동일종목 주식보유한도 변경 내역

적용기간	적용내용
1991.1 ~ 1993. 12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다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액의 20%까지 면세
1994.1 ~ 1996.12	- 증여세가 면제되는 동일종목 보유주식 기준을 5%로 축소 • 1990.12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 초과분, 1993.12말 이전 취득·보유한 주식은 20%까지 면세
1997.1. ~ 1999.12	-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 이내 보유 의무화 • 유예기간: 5%초과~20%이하는 3년, 20% 초과분은 5년 • 위반시 가산세 부과(1회): 초과주식가액의 20% • 성실공익법인은 제외
2000. 1 ~	- 5% 초과보유시 가산세부과방법 및 회수 변경 • 대상: 2000. 1. 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 • 매사업연도말 시가×5%(10년간) • 성실공익법인은 제외

1999년 세법개정으로 가산세 부과방법이 개정되어 매사업연도 말 시가의 5%를 10년까지 부과하며 5% 초과여부 판단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상속·증여에 의한 주식출연시 출연전 5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특수관계인을 주식의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특수관계인에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그 임원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 제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한다(5% 초과보유분에 대한 기존의 가산세는 19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함).

운용소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매각대금 사용의무기준을 강화하고 세무확인 대상을 확대했다.

#### 나.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1999. 1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해 동일종목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성실공익법인의 기준도 운용소득의 90% 또는 출연재산 가액의 5% 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으로 개정되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1999년 12월 31일 현재 30%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1/2 이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미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 3. 운용소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가.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상향 조정(1999. 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199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수익용 재산의 5% 또는 발생소득의 50% 중 큰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사용기준금액이 상승하여 발생소득이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가액의 5% 규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운용소득의 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도 상향조정한다.

정은 삭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존속기간 내내 사후관리하던 것을 증여세의 일  
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하여 10년간만 사후관리하도록 하였고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공익  
법인의 판정기준도 상향조정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비율이 50%에  
서 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기준도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었다. 공익목적 사업 범위를 통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인건비·관리비를 운용소득의 30% 범위 내  
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나. 매각대금 사용의무기준 강화(1999. 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  
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1995년 수익용재산의 매각시 3년내에 매각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  
부터 적용하며 출연받은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만 사후관리한다.

최단기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보유재산 매각금액  
의 사용의무 기간 및 기준금액을 강화하였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대  
상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국세·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각대금은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이상, 2년 이내 60% 및 3년 이내 90% 이상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의  
무기간을 강화하였다. 매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동 제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서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세무확인 대상 확대(1999. 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1996년 12월에 신설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관련사항의 확인·검사제도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 2회 외부  
전문가(3인 이상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에 의해 출연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자기내부거래 위반 여부, 동일종목주식의 5% 초과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7/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자산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출연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연재산가액이 전체 출연재산가액의 5% 미만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다.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외부확인·검사결과는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부 작성·비치 의무(10년)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에는 연간 수입금액과 연간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에 대해 7/10,0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999년 12월 세법개정에서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을 자산가액 5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자산가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였다.

**사회의 균형적 발전 및 국민후생의 향상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V. 정책방향

### 1. 기본시각의 전환

사회의 균형적 발전 및 국민후생의 향상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일부 대규모 공익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운용사례 때문에 공익법인 전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관련제도의 고안 및 개정작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999년 개정에서 세무확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며 향후 대상 법인의 지속적인 확대로 모든 공익법인이 세무확인 대상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리·감독이 정상화될  
경우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식 출연에 대한  
비중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기부)이 확대되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식 출연 제한의 합리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연자 산이 주식인 경우 그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리·감독이 정상화될 경우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식 출연에 대한 비중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의결권 주식의 출연은 비중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으나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과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공익법인에 출연하기 위해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1999.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법제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손원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0. 

#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韓 相 國 연구위원(skhan@kipf.re.kr)

## 1. 문제의 제기

조세법의 이상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수입의 충분한 확보, 자원의 최적배분에 합당한 구조, 징세비가 적게 소요되는 구조, 납세자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어 국민의 조세정의 내지 조세감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이와 같은 이상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의 원리와 범주 내에서 입법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입법을 해야 하고, 이어서 행정부도 법의 구체적 집행시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제의 성장, 사회구조의 고도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급속한 국가재정수요의 확대는 대부분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률의 증가란 곧 국민 개개인의 조세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이는 일면 조세마찰과 조세쟁송의 증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각 법 영역에서 많은 위헌선언(변형결정 포함)이 내려짐으로써(〈부표 1〉 및 〈부표 2〉 참조),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 영역에서의 위헌결정으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즉 조세에 대한 관념이 납세의무로서만 인식되던 차원에서

조세에 대한 관념이 납세의무로서만 인식되던 차원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수의견은  
위헌소지가 있는  
세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헌재가 더욱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 바 있다.**

납세자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 전환도 조세마찰과 조세쟁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세법에 대한 최초의 위헌판단은 1989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이후 헌재로 약칭)에서 선고된 증여의제에 관한 구상속세법 제32조(명의신탁)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 최초의 변형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를 내세워 결정 주문의 다양화 가능성을 스스로의 결정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헌심판 형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감면 및 세액공제의 계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2000년 1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96헌바 95, 97헌바 36, 97헌바 64)을 내린 바 있다. 동 결정의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의하면, 위헌소지가 있는 세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헌재가 더욱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수의견은 1988년부터 헌재가 활동한 이래 법의 공백 및 국가 세수 등을 감안해서 조세법에 대해 여러 차례 변형결정을 내렸지만, 행정기관이 위헌 조항만 수정할 뿐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개정 노력을 확대하라는 촉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는 세법의 조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조세법에 대한 위헌심판 판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조세법의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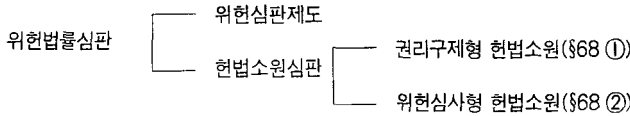
## II. 위헌심판제도와 현황

### 1. 법률의 위헌심판제도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회 제정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행정부의 위임입법과 처분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대법원에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현행법상 법률의 위헌심판제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법률의 위헌심판제도



현행 헌법에 의하면, 국회 제정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행정부의 위임입법과 처분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대법원에 있다.

2. 위헌심판의 결정 유형

현행 법률의 위헌심판의 결정 유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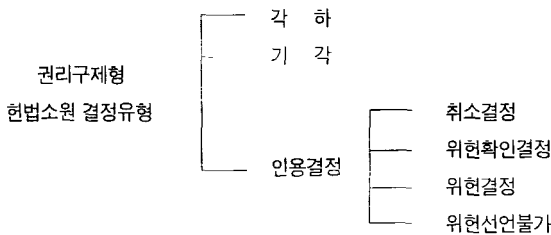
〈그림 2〉 위헌심판의 결정 유형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결정유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결정 유형



**조세법 관련 4. 위헌심판 현황**

사건은 30건으로  
 약 11.5% 정도를 차지한다.  
 처리된 전체 심판사건에서  
 위헌심판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조세법 관련  
 위헌심판사건의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부로 시행된 이래 2000년 1월 31일까지 접수·처리된 현황을 보자(〈부표 2〉 참조). 1988년 9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심판사건이 총 5,45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4,959건이 처리되고, 495건이 미제상태에 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 기각이 1,374건, 각하가 2,453건으로 접수된 심판사건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접수된 심판사건 중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총 4,30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총 757건, 위헌법률이 총 379건의 순이다. 처리된 심판사건 중에서 위헌이 4.1%, 합헌이 9.9%이며(변형결정과 인용 불포함),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이 각각 약 1.0%, 0.6%, 0.5%를 차지한다.

1988년 9월 1일부터 1998년 8월 31일까지의 조세법 영역의 심판 결정 건수를 보자. 1998년 8월 31일 기준(처리기준)으로 현재의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사건은 총 261건이며, 이 중에서 조세법 관련 사건은 30건으로 약 11.5% 정도를 차지한다. 처리된 전체 심판사건에서 위헌심판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조세법 관련 위헌심판사건의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난다.

**III.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기준**

현재는 일반적으로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법률의 명확성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입각해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법적으로 볼 때, 조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너무 적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세법률주의(제38조, 제59조) 및 평등주의(제11조 제1항)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직접적인 규정이다. 그밖에 재산권보장과 한계에 관한 제23조·제37조, 재산권의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제13조 제2항,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제75조, 조세에 관한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제27조 제1항, 지방세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제117조 제1항 등의 간접적인 규정이 있다. 조세법에 대해서는 주로 재산권보장(§23, §37)의 규정에 대한 합치 여부, 조세법률

주의(38, §59), 조세평등주의(§11 ①),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75), 신뢰 보호의 원칙(§13) 등의 준수 여부가 주로 위헌심사 기준이 된다.

오늘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는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 보장규정(§23, §37)은 특정 조세의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규범이라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은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 보장규정과 제도 보장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상위개념)을 실천하는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의 양대 원칙을 실천 내지 담보하는 파생원칙으로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결국 조세법이란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상위개념으로 하고 동 규정을 실천하는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이러한 양대 원칙을 실천 내지 담보하는 파생원칙으로서의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바탕 위에서 입법·해석·적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서는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대한 합치 여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의 준수 여부가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법 분야에서는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대한 합치 여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  
주의·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의 준수 여부가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의 근거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이다. 오늘날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입법 및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납세와 관련된 재산권 보장이 라는 적극적·실질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해서 현재는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넓게 보아 과세요건 및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모두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임입법의 허용한계에 관한 것이고 이에 관한 현재의 위헌판단 사례도 적지 아니하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一義的이고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은 복잡다

**조세평등주의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기하고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것이므로 불확정 개념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불확정 개념은 조세의 공평이나 합목적성 또는 공익에 적합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공익', '공평', '실질',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부당하게 낮은 대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용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과세관청에게 자의적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억제되어야 하나, 한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정수, 나아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참정권의 제한 및 재산권 박탈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진정 소급과세의 경우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서 신뢰보호를 위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적용하여야 한다(1995. 10. 26. 94헌바12)는 일종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1991. 11. 25. 91헌가6).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는 주로 세법의 해석과 집행의 측면에서 조세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서의 정의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대하여는 사법적 통제가 용이하지만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것이 과연 조세공평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만 가릴 수 있을 뿐 조세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실효적인 통제가

어렵다. 앞으로 조세공평의 시비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하나의 큰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평등주의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법률적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경제적 실질까지도 검토하여 그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예외 내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개별세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특정의 경우에만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곧 기본권의 위헌적인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공권력 행위의 위헌성이 인정된다.

### 3.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세법에 있어서 위임규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법에 그 목적·범위·기준·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기본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個別授權의 원칙들은 조세법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훼손될 수 없는 근본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위임입법 허용 기준을 보자. 독일 기본법 제80조 제1항은 법규명령의 위임에 있어서는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

세법에 있어서  
위임규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법에  
그 목적·범위·기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재는 위임의 한계와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1. 7. 8. 91헌가4 ; 1994. 7. 29. 93헌가12, ; 1995. 11. 30. 91헌바1 ; 1998. 4. 30. 96헌바78 등). 헌재의 위임한계 일탈을 이유로 한 위헌판단은 초기에는 입법촉구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 4. 신뢰보호의 원칙(신익성실의 원칙)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요소이다. 일정 법률의 효력하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는 또한 이 법에 의하여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며, 개인은 과거의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으로서의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은 무엇보다도 바로 소급효력을 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민감하게 저촉된다.

#### IV. 조세법의 위헌 사례 분석

1998년 8월 31일 기준(처리기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 사건 총수 261건 중 조세법 관련 사건은 30건으로 약 11.5% 정도를 차지한다.

- 위헌 또는 인용결정 심판사건 : 20건
- 헌법불합치결정 심판사건 : 2건
- 한정위헌결정 심판사건 : 6건
- 한정합헌결정 심판사건 : 2건

지금까지의 조세관련 위헌심판에 대한 주요 청구내용(헌재 1989.7.21.89헌마 38; 헌재 1990.9.3.89헌가95; 헌재 1994.6.30.89헌바9; 헌재 1994.7.29.92헌 바49 등)을 각 개별 세법별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 우선 범위 · 시점, 심사 · 심판 · 제소기간의 산정규정, 불변기간의 불명확,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소급입법 등
- 상속 · 증여세법 : 증여의제 규정, 상속재산평가 규정, 간주규정의 확대, 불명확한 법률규정, 위임입법의 한계 등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의 위임, 기준시가 원칙의 위헌여부 등
- 법인세법 : 소득처분 위임규정, 공과금의 손금산입 규정, 위임입법의 한계 등
- 지방세법 : 조세채권 우선 범위, 심사청구기간의 불명확, 위임입법의 한계 등

조세법의 위헌심판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감면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유형을 정리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감면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 V. 향후 입법정책 방향

제6공화국 헌법에서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신설된 헌재에 부여하면서 위헌심사가 매우 활성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부표 1〉 참조). 현재의 조세법률에 대한 적극적 위헌심사는 헌법의 규범력 확보와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1994년 7월 29일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세법 전체의 적용이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 재정적 파장이 컸지만,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납세의무 → 납세자의 기본권)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헌재의 조세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 중 위헌결정된 사건의 쟁점은 주로 재산권 보장과 그 한계, 조세법률주의의 준수 여부 그리고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 등에 관한 것이며, 이 중에서 포괄위임입법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주요 조항(국세기본법§48①, 소득세법§20④, 상속 · 증여세법§42②, 법인세법§21⑤ 등)에서도 상당수가 포괄위임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중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 단계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위

**조세법의 경우  
여타 법률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위임입법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입법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이와 같이 위임입법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배경을 보자.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활동의 적극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 조세의 복잡다기화, 조세법의 전문기술화, 급변하는 경제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세법의 경우 여타 법률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위임입법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임입법은 범형식(발령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部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보면, 복잡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위임입법의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나라마다 위임입법의 한계에는 차이가 있으며, 독일 헌법상의 수권 범위(기본법 제80조 제1항 :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州정부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법규명령을 發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가 비교적 명확하다.

위임입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授權 限界 內에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곧 중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입법정책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헌법 제75조는 授權을 독일의 기본법처럼 그 내용·목적·범위로써 특정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의 한계와 내용상의 한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를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리하여 보면 먼저 授權의 한계와 관련하여 의회는 법률에서 수임기관을 특정하고 입법권을 위임해야 한다. 입법권의 전면적 위임, 또는 일부의 포괄적인 위임은 입법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입법권의 위임은 개별적·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된다. 조세법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제분야 등에서처럼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구체성·명확성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

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한계를 보면, 위임법규명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위임입법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향후 입법정책 방향(중단기 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법규명령의 수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임기관은 이미 특정되어 있으므로, 입법권의 위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되도록 관련 세법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기본법 제80조 제1항처럼 수권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임법규명령의 내용상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위임법규명령은 모법인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세법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세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셋째,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넷째,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헌재 1996.6.26. 93헌바2).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정책방향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각에 입각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현재의 조세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심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수준, 권리구제제도 및 경제의 빠른 성장을 뒷받

### 위임법규명령은

모법인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세법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세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조세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위헌심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수준,  
권리구제제도 및 경제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한  
경제정책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침한 경제정책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는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위임입법이 허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입법의 문제로만 이를 살피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수권범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그것의 당부를 판정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분야에 있어서 조세행정의 특수여건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위임입법 한계원리를 조세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 경우 행정부에게 독자적인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KPF**

<부 록>

<부표 1>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건)

연 도	접 수	처 리
1988	39 ( 26)	13 ( 13)
1989	425 (283)	307 (199)
1990	362 (290)	197 (186)
1991	264 (255)	304 (200)
1992	392 (367)	326 (313)
1993	385 (368)	333 (327)
1994	347 (336)	292 (270)
1995	476 (459)	503 (484)
1996	552 (527)	475 (457)
1997	538 (523)	508 (484)
1998	657 (635)	733 (710)
1999	924 (904)	903 (885)
2000.1	93 ( 91)	65 ( 64)

주: ( )안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건수임.  
 자료: 헌법재판소

<부표 2> 현재 사건접수처리 현황(1988. 9. 1. ~ 2000. 1. 31.)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접 수	처 리											미 제	
			합 계	결 정											취 하
				계	위 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합 계		5454	4959	4690	192	49	31	26	96	466	1374	2453	3	269	495
위헌법률		379	358	262	56	21	8	7	-	153	-	17		96	21
탄 해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권한쟁의		11	9	8	-	-	-	-	2	-	1	5		1	2
헌 법 소 원	계	5064	4592	4420	136	28	23	19	94	313	1373	2431	3	172	472
	§68 ①	4307	3977	3826	19	2	5		94	3	1373	2328	2	151	330
	§68 ②	757	615	594	117	26	18	19	-	310	-	103	1	21	142

자료: 헌법재판소

#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비한 세제 및 세정의 방향모색



李 哲 印 전문연구위원(cilee@kipf.re.kr)

지난 2년간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의 팽창과 더불어 관련 비용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 1. 문제의 제기

지난 2년간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의 팽창과 더불어 관련 비용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뿐만 아니라 강한 재분배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 관련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회보험기구가 신설되거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세 또한 경기조절적 기능을 넘어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달리 표현하자면 재분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가져오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조세가 부담하는 초과부담의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로서 사회보험과 별도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재정 수요 및 지출의 확대가 임박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소득과약기능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약 업무에 보다 많은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에 대한 의존이 어느 때보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기능의 강화는 곧 세무행정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러한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한 한 작은 정부의 원칙을 고수하고 차선책으로서 조세제도에 의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재정팽창을 막고, 근로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적자재정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수혜자에 대한 자격심사(means test)를 세무행정에 의해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부패척결 등 근원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도 업무의 객관화 및 효율성 제고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조직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반드시 과거에 비해 업무의 강화를 예상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벌칙과 인센티브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한 소득의 성실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납세순응책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세제도 또한 재분배 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계속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능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능의 지나친 강화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재분배의 정도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정부가 정확한 정보 없이 이를 조정하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한번 결정된 사회보장제도는 그 수혜자를 만성화 또는 기득권화하는 현상(welfare dependance)을 보여 이를 축소하는 데 많은 부담이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있어서 조세제도 및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를 위해 조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주어진 조세행정의 수준에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보다 엄밀한 분석이 되려면 전체 조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 인센티브를 고려한 세제의 역할을 살펴본 후, 제Ⅲ절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제Ⅳ절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에 대비한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복지재원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원의 필연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때 세정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Ⅴ절은 국세청 및 사회보험기관간 업무의 분담 및 협조 문제를 각국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Ⅶ절은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 II. 사회안전망 구축과 조세제도

### 1.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실업과 빈곤층이 증대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 요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에 따른 자영자 소득과약문제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와 자영자 그리고 자산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성에 대한 불만을 더욱 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GDP 대비 4.2%, 1999년 GDP 대비 2.9%(481조원 대비 13조 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제도가 생산적 복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그리고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란 사회경제활동의 결과에 관계없이 소비수준을 보장해주는 보조라기보다는 일정수준의 소득 획득을 가능케 할 투입에 대한 과감한 보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보장,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보조가 흔히 언급되는 시혜적 복지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조는 지난 1996년에 폐지된 미국의 AFDC(Aids to Families with Dependant Children)에 비해서도 시혜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 전에 보다 많은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복지재원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

해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실납부 유인책을 마련하되 이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한 생산적인 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인센티브를 세제개편을 통해 제고하고 동시에 복지재원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정책혼합(policy mix)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향후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정책혼합으로서 고려할 만한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감소하던 실업률이 다시 늘고 있으며, 고용구조면에서도 일용직·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 위험의 증가와 조세

### 가. 고용여건의 악화

경제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오던 추세가 다시 반전되어 늘고 있으며, 고용구조면에서도 일용직·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11월중 취업자와 임금근로자가 각각 5.9%와 7.6%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은 오히려 0.6% 감소하고 일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29.3%와 9.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53.0%를 기록하여 1999년 3월에 50%를 넘어 이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실업률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1999.10	1999.11	1999.12	2000.01
실업률	2.0	2.6	6.8	6.3	4.6	4.4	4.8	5.3

자료: 통계청

### 나. 노령화의 지속

의료 및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노령인구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노령인구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노후소득에 대한 보조가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현 경제여건하에서의  
사회복지 수준 제고는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세원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 노령화 추이

(단위: 천명, %)

연 도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노령화지수
1990	42,869	2,195	20.0
1991	43,296	2,224	20.3
1992	43,748	2,346	21.7
1993	44,195	2,437	22.7
1994	44,642	2,542	23.9
1995	45,093	2,657	25.2
1996	45,545	2,776	26.7
1997	45,991	2,908	28.3
1998	46,430	3,051	29.9
1999	46,858	3,204	31.4
2000	47,275	3,371	32.9
2005	49,123	4,253	40.8
2010	50,618	5,032	49.9
2015	51,677	5,846	61.4
2020	52,358	6,899	76.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다. 자산가치 및 투자수익률의 등락

금융시장의 불안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부의 재분배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운(luck) 또는 정보력의 유무에 따라 부의 축적 및 상실이 이어져 건전한 투자가 위축되고 빈곤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표 3〉 주요 자산 가치 변화

(단위: 천명, %)

	1996	1997	1998	1999년 1/4분기	1999년 2/4분기	1999년 3/4분기	1999년 4/4분기
주택가격지수	101.50	102.70	90.70	92.30	92.60	94.20	93.80
토지가격지수	100.94	101.25	87.48	87.79	88.52	89.25	90.05
주가지수	651.22	376.31	562.46	618.98	883.00	836.18	1,028.07

주: 주택가격지수와 토지가격지수는 1995년 100.0기준임.  
자료: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금융」, 각호: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증권거래소.

만약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한적이라면 현재와 같이 위험이 높은 경제하에서 과감한 세율의 인상과 손실에 대한 보존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Varian (1980)). 그러나 현재 피할 수 없는 개방화의 추세 및 편중된 과세기반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소득세 비중의 상승 등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신규)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 경제여건하에서의 사회복지 수준 제고는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세원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AFDC제도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현금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복지제도 중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3. 몇 가지 적용사례: 미국의 AFDC, NIT, EITC 그리고 TANF를 중심으로

#### 가. AF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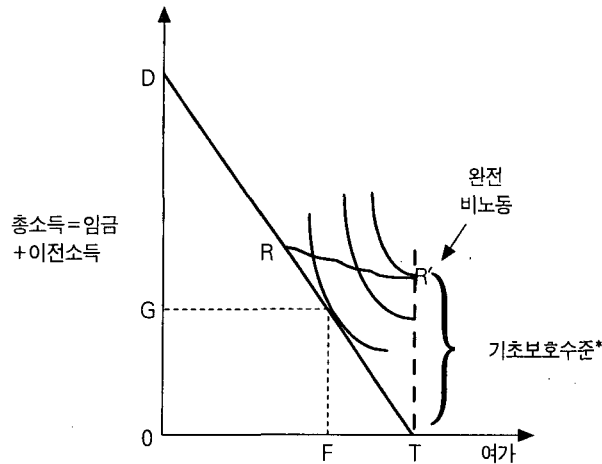
##### 1) 제도의 내용

AFDC제도(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현금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복지제도 중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6년의 경우 455만가구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재정지원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996년도의 경우 미국 내 평균은 매달 가구당 371.58달러였고, 주별로는 큰 편차를 나타냈는데 알래스카주가 730.67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시시피주가 117.86달러를 지원하여 가장 적었다(푸에르토리코 제외). 지원대상의 선정은 각 주별로 주거, 의복, 기타 생활편의를 포함한 최저생활비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로 하고 있으며, 주택과 차량을 제외한 1,000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FDC 제도의 시행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감소가 전체적인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임금의 상승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AFDC의 경우



2) 근로의욕의 저해

가구의 소득이 AFDC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구주(또는 가구원 중 노동자)는 자신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하므로 노동의욕을 저해한다. 〈그림 1〉에서 정부의 AFDC 지원이 없는 경우의 노동과 여가의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DT 선과 노동과 여가에 대한 효용관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노동의 양이 결정될 것이다. 그 경우 TF만큼 노동하고 그에 대한 소득 OG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RR' 곡선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되면 가구주(노동자)의 소득곡선은 DRT에서 DRR'로 변화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원래의 TF만큼의 노동을 하던 자가 아예 노동을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 TR'만을 소득으로 획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복지제도가 필연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만약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완만하다면 DR곡선상의 점에서 노동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하며 Moffitt(1992)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감소가 전체적인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임금의 상승은 물론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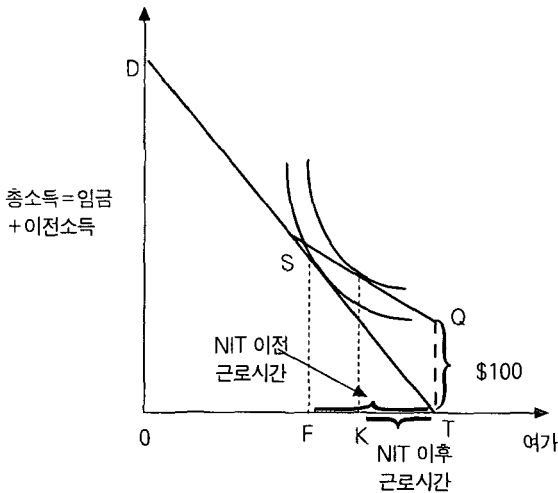
나. NIT(Negative Income Tax)

NIT는 AFDC처럼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는 점에서 전통적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즉 지원대상의 인적, 소득별 구 분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 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월간 100달러(TQ)를 보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 25%로 소득세가

NIT는  
지원대상의 인적,  
소득별 구분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림 2〉 NIT의 경우



부과된다면 40달러의 소득을 가지는 노동자는 40달러에 대한 소득세 10달러를 내고 최소 보장 100달러에 세후소득 30달러를 더하여 130달러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림 2〉에서 부의 소득세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자는 직선 DT 위 의 어느 점에서 노동과 여가의 분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초보장 100 달러와 부의 소득세의 존재로 인해 T점의 기초보장액이 100달러인 Q에서 부의 소득세율에 따른 기울기로 새로운 예산제약선 DSQ가 정의된다. 이때 노동자는 자신의 무차별곡선이 DSQ와 접하는 점까지 노동(TK)을 공급하게 된다.

EITC의 기본구조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서  
 세액공제 수준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개인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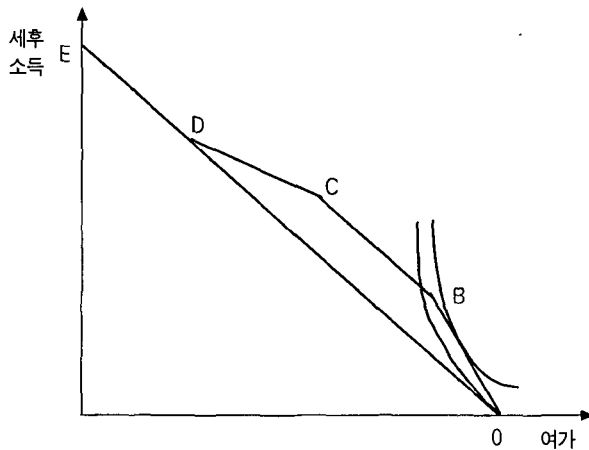
NIT가 AFDC와 다른 점은 기본보장소득(100달러, TQ)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산제약선이 AFDC의 경우 기울기가 매우 완만하여 노동 공급이 위축되지만 NIT에서는 부의 소득세율에 따라 상당히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므로 노동의 공급이 보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제도도 시행하지 않았으면 실현되었을 노동 공급 TF보다는 TK가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공급 유인의 감소라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획득소득 세액공제제도)

EITC는 1975년에 처음 소개된 후 1986년, 1990년 그리고 1993년에 확대되었다. 1996년 현재 연방정부의 지출에 의하면 EITC가 AFDC보다 1.7배 정도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중요한 공적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EITC의 적용을 받으려면 첫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소득이 일정한 수준(1996년 현재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소득자의 경우 28,495달러)이하이어야 하고 셋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EITC의 기본구조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에서 세액공제 수준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개인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8,890달러 이하인

〈그림 3〉 EITC 예산제약



경우는 공제율을 40%(최대 3,556달러), 8,890~11,610달러 구간에서는 3,556달러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11,610~28,495달러 구간에서는 21.06%를 적용하여 최대 11,610달러를 공제하는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OE의 예산제약선에서 D점에서의 세전소득이 28,495달러이고 구간 BC가 수평이동하여 직선 B와 C점에서의 세전소득이 각각 8,890달러, 11,610달러이다. 즉, EITC의 적용에 따라 노동자의 예산제약선은 ADE에서 ABCDE로 변경되게 된다. EITC의 적용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을 최초 한 단위 증가시킴에 따라 ADE직선 위에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1.4배의 소득을 AB직선 위에서 얻게 될 것이다. BC직선 위에서는 EITC 적용 전보다 3,556달러의 소득을 더 획득하게 되고, CD직선 위에서는 노동의 증가에 따라 AE직선상의 소득증가분의 21.06%가 상대적인 증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EITC는 완전하게 노동공급 감소를 억제하지는 못하지만(예, 무차별곡선이 CDE에 접하는 경우 등) AFDC나 NIT의 경우보다는 노동공급 감소의 정도를 작게 한다. 또한 저소득자들에게 대한 지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1)</sup>.

#### 라.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최근 들어 자녀를 가진 직장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주부들이 직장을 가지려는 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미국 노동시장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낮은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주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정부보조로 생활하는 개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십대에 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으로 노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마약복용이나 판매에 가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미 행정부는 1997년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여 기존의 AFDC 대신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시행하게 되었다. TANF는 주정부가 기존 AFDC 지출액 상당액만큼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식으로 받은 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사전적으로 복지제도의 존재를 인식하여 의지하게 되는 경향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TANF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설정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이러한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미 행정부는 1997년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여 기존의 AFDC 대신 TANF를 시행하게 되었다.

1) 최초 노동공급 증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세액감면 비율이 40%이기 때문이다.

TANF는 수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만 제공함으로써 공적부조제도에 영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제거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지원대상이 되어도 주정부는 지원내용에 대해 사전 언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정부는 지원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방기금은 최대 5년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주정부는 상근근로자 가구의 비중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연방 정부는 2002년까지 편부모가정의 경우 가장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근로자인 가정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양부모가정의 경우는 부모 중 1인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근근로자인 가정이 전체의 9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주정부는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부모에 대한 지원을 절감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만약 어머니가 자녀의 아버지를 명백히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또는 전부)를 중단해야 한다.

넷째, 주정부는 10대 미혼모의 임신을 감소시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10대 미혼부모의 경우는 학생이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마약관련 범죄경력자의 경우 주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TANF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합법적인 이주를 한 경우에도 이주하기 전의 지역에서 TANF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식료품 지원, 그리고 긴급 의료지원을 제외한 TANF 지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없다.

여섯째, 이전의 AFDC의 지원대상 소득을 넘는 가구는 TANF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은 공적부조제도에 영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을 축소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인데 그 핵심사항은 수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 4.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가. 교육, 재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부합하는 공적부조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훈련 관련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본인 및 가까운 친척에 지출한 유치원, 초등고 및 대학교육 교육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허용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직장 및 직업 이전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원은 재교육 및 교육훈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조가 되고 있지 못한다. 직업훈련의 경우 법인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소수 행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사실상 없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실상 실업이 발생한 후에 참가해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을 보유한 기간 동안이라도 각종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의 일부공제를 적어도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을 보유한 기간 동안이라도 각종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의 일부공제를 적어도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도입 검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과 소득 상실로 인해 확대된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이지만 아직 재원규모나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빈곤대책의 기본이 되는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빈곤층 추산은 <표 4>와 같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보다 많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분

<표 4> 생활보호대상자 전망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2000년 2월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호 대상자의 증가
- 거택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20만 5천여 가구	보건복지부 추정치: 자영업자 포함시 현재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 시설보호대상자: 8만 1천여 명	약 100만명이 늘어날 전망
-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12만 1천여 가구	

주: 2000년 2월 기준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나 이는 생계·의료·교육보호의 대상이 되는 54만명의 생계보호 대상자와 의료·교육·자활보호의 대상자가 되는 138만명의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눌 수 있음(근로능력 유무·연령·재산수준 등의 기준으로 분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을 없애고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획득하는 대상자들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년 10월 이전에 안정적인 재정구조하에서 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류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년 10월 이전에 안정적인 재정구조하에서 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조화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ITC는 負의 소득세(NIT)의 일종으로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현금급여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공적 부조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부의 소득세 도입은 세출을 세입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복지지출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NIT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면세점 부근의 근로자들이 갖게 되는 근로의욕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금액을 낮게 유지하고 근로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 부의 소득세 도입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약 50% 그리고 자영자의 60%인 과세미달자의 소득과약이 가능해야 하므로 조세행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세제 및 세정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

##### 가. 주요내용

##### 1)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와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근로능력 유무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과 불구·폐질환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생계비 지급 등 급여내용에 차이를 두기 위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구분은 폐지하되 다만 근로능력자의 자활지

〈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정기준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1999년 : 월소득 23만원 재산 2,900만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급여종류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긴급급여 신설
급여방법	가구별 총체적 지급이 아닌 보호수단별 지원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제적 자활지원

생계비 지급 등  
급여내용에 차이를  
두기 위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구분은 폐지하되  
다만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자의 구분은  
두고, 판정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자의 구분은 두고, 판정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의 주거실태가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생계비에 주거관련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긴급급여를 신설, 긴급히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게 우선 급여를 실시하고 사후에 적격 여부를 가려내고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근로인센티브의 수준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는 한편, 자활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사회봉사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르는 행정 및 감시비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으므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근 재경부의 20% 소득공제방안이 일례이다. 이러한 시각의 발전된 형태가 궁극적으로 NIT 또는 EITC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 근로능력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ii) 자활지원계획은 근로능력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조사·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자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결정, (iii)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후견,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관련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을 확충하고 시군구(읍면동)를 중심으로 연계망을 구축<sup>2)</sup>, (iv) 근로능력자에게 근로활동이 가능한 가구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연계하는 것을 주요계획으로 삼고 있다.

단, 이러한 사항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회보험과의 중복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취업알선은 고용보험제도의 활용에 의해 가능할 것이고, 한편, 여성의 근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무관하게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3)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소득인정액에 의한 대상자 선정)**

현재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2003년부터 일원화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혜의 폭을 넓힌다. 현재는 소득이 거의 없는 실업자라도 주택소유 등 기본재산을 가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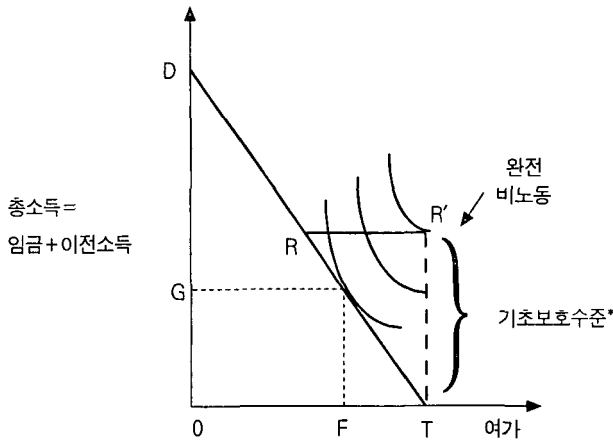
2) 이는 현행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인프라에 추가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첫째, 모든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좋으나 생활보장의 수준이 높아 근로의욕의 감퇴가 예상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기초생활보장선 RR'는 근로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특히, 모든 개인이 그 수혜의 대상이 됨으로써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 또한

모든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좋으나 생활보장의 수준이 높아 근로의욕의 감퇴가 예상된다.

<그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주: 보건복지부 1999년 12월 1일 발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원) : 324,011(1인), 536,614(2인), 738,076(3인), 928,398(4인),  
 1,055,588(5인), 1,191,134(6인)  
 ※ 2인가구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 268,307원

<표 6>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단위: %)

임금	1996	1997	1998
50만원 미만	3.9	2.4	2.7
50 ~ 90만원	27.6	22.8	22.2
90 ~ 150만원	35.6	35.2	34.6
150 ~ 200만원	17.2	19.3	19.4
200만원 이상	15.8	20.4	21.2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10. 25.

**저소득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현금이전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표 6〉은 임금수준별로 근로자 수의 상대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25% 정도가 9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93만원 이고 맞벌이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인구가 수혜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가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보다 많은 비대상자들이 수혜계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잠재적 수혜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초래하는 근로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해 또다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는 몇 가지 개념적 혼동이 개입되어 있다. 우선, EITC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술한 주장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과거 미국에서 이용되었던 NIT와 동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를 NIT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체하여 NIT에 의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된다. 참고로 AFDC의 경우 근로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만큼 급여액을 차감하여 보호의 수준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킨다.

둘째, 현금급여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현금이전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경제활동에까지 세무행정의 감독이 미치지 하려면 지나친 행정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소득파악기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사회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여도 공적부조제도는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변천을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AFDC 프로그램이 축소 및 폐지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반면, 노약자, 장애자에 대한 보조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반면 노약자, 장애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보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숙련노동 및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때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성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주로 저소득층이 높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복지프로그램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복지제도가 확충되려면 생산적 복지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는 수혜자들의 경제활동을 감독하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ITC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 IV. 조세행정

##### 1.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정책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주어진 경제환경하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채워 줄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별로 없다. 그러나 종종 조세행정의 강화에 의한 세수의 증대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배경으로서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로 세부담 불공평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적자재정기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복지재원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가져오는 세수효과는 그리 높지 않을지라도 공평한 조세의무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단, 이러한 주장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부를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 또한 발견되는데 이는 개인들이 당면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대부분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선진제국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조세행정이 미약하여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을 때에 납세실적에 따라 납세자에게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를 모델로 하여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오히려 실지조사 면제가 탈세를 부추기는 역할만을 한다 하여 폐지한 경험이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포트폴리오 접근이론에 의거, 세무조사를 이용한 세무행정의 강화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이 꾸준히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세무조사가 조세의 목적만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 외의 목적으로 변질·이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인센티브의 부여가  
재정의 확보기능을  
수행하려면 세무행정의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경제학 문헌검색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납세순응 문헌을 조사한 결과 세무조사 이외의 수단은 분석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조건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납세의무 이행이 오히려 포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보면 문제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은 곧 대다수의 불성실납세자를 염두에 두고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포상이 현행 세무조사의 실태를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얼마나 강한 인센티브인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납세순응을 위한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각종 납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납세순응을 유도하려면 납세액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부여가 재정의 확보기능을 수행하려면 세무행정의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진국으로 이행중에 있는 국가의 세무행정이라면 세무조사와 인센티브의 정책혼합이 유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처벌 위주의 행정이 정부 주도적이거나 부정적 인상을 준다면 납세순응이 상당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소간의 자발적 순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적발확률이 상당할 때 이미 상당한 수준의 납세순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보다 많은 세무행정비용의 투입에 의해 보다 높은 납세순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세무행정의 강화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을 인센티브로 전용하여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방법이 보다 높은 납세순응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 또는 실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청색신고제도가 정착된 것을 본다면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녹색신고제도는 실패하였는데 이를 납세의식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세무조사의 부재에 보다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이라도 과거의 조세행정사의 변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인센티브의 부여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인센티브의 비금전적 측면, 예를 들어 사회적 명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논의된 바 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전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세무조사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단기방안

#### 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일정기간 동안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예: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성실납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무조사가 가장 정확한 평가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모든 세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한정된 분야(예: 조세체납, 기장에 의한 신고,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의 비율 등)에 국한시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몇몇 특정 소득에 대한 조사일지라도 그 내용이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 성실납세를 낮은 비용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매년 납세자의 성실납세 정도를 평가하여 마일리지 적립제도 도입

납세자의 '마일리지' 정도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신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공급하거나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축적된 마일리지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후속 조치로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신뢰할 만한 성실납세 평가방안이 이루어진 후 다양한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성실납세 평가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다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2) 장기방안

#### 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우대방안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세부담의 축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대방안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실업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 예를 들면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보다 높게 부여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하되 연금급부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구조를 정립할 경우 앞서 언급한 마일리지(성실납부의 지표)에 따라 과세상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조세제도 개편에 의해 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세부담의 축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기장자의  
서면신고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녹색신고제도와는  
달리 신고기준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세행정의 문제인 성실납부의 제고를 유도하고 연금제도 운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어 이점으로 판단된다.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급여의 수준과 함께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중요한데 마일리지가 높은 개인에게는 실업급여의 수준과 기간을 보다 길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어 실제로 성실납부가 문제시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인센티브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보험상의 혜택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보험의 사용실적을 국민연금제도에 연계하는 방안을 실시중인데 조세납부실적의 성실도에 따라 의료보험납부액 및 혜택의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각국의 성실납부 유인제도

다음은 성실납세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로서 일본, 대만 및 우리나라의 인센티브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가.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현금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 자산대장)를 비치한 자 중 기장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자를 청색신고대상자로 한다.

청색신고대상자는 감가상각특례, 세액공제, 소득특별공제, 순손실이월공제 및 환급, 재고자산 및 충당금 설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기장자의 서면신고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녹색신고제도와는 달리 신고기준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 나. 대만의 영수증 복권제도

복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중앙은행에서 인쇄하여 일괄 공급한 후 매 2개월마다 추첨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요 비용은 영업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영수증의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당첨된 영수증만 제출하므로 성실신고 검증기능이 미약하여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영수증 관급은 행정규제 철폐라는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것이다.

**다. 기장세액공제제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및 기장세액공제와 관련한 장부 및 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및 복권제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계산:

$(\text{사용금액} - (\text{과세급여} \times 10\%)) \times 10\%$ 금액, 100만원 한도

**마. 모범납세자 포상**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6개월~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면제하고, 성실납세증을 발급하여 1년간 공방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바. 싱가포르의 의료보험 실적의 국민연금 연계**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고자 보험사용실적이 납부액에 비해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국민연금급여에 이전시켜 준다.

**싱가포르에서는**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고자**

**보험사용실적이 납부액에**

**비해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국민연금급여에**

**이전시켜 준다.**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과표양성화대책을 통해 자영자소득을 파악하고 나아가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조세의 경우 납세의 성실도에 따라 국민연금 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겠으나 납세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일정 비율의 표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벌칙과 성실도에 따른 포상을 제공한다.

### V. 기관간 업무의 분담 및 협조 문제

#### 1.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의 국세청 단일화의 검토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조치에 따라 자영자의 소득과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과표양성화대책을 통해 자영자소득을 파악하고 나아가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별도의 지방사무소 조직을 이용하여 권장소득을 추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납세자인 자영자의 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을 국민연금 목적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세청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보험료 부과징수를 담당하게 될 경우 첫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표양성화정책을 필연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영자 소득과약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되고,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한 각종 보험공단이 소득과약을 위해 지불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세청의 과표양성화방안과 함께 부과징수담당에 따른 제반 고려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연금 자영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단기에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주요 이슈인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개별 보험의 운영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원시소득자료를 해당 보험에 제공만 하고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청이 담당하여 보험운영과 소득 과약 및 보험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간 분업의 효율화와 함께 공적부조 체제를 조세제도 및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강화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므로 소득비례형 또는 현재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부분만을 위주로 한 형태

등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주요국의 사회보험기관과 세무행정기관의 협조

각국의 사회보험제도와 세무행정기관간의 업무상 분업 및 협조사항은 지면 관계 상 생략하고 여기서는 주요 특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영미 계통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과약 및 조세징수 능력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무행정기관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수기관이 세무행정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개별 사회보험에 의해 개별 징수되지 않고 연합징수기관 또는 대표적 보험기관이 일괄하여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문제에 있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체납문제와 조세의 체납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체납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거나 체납건수 또는 체납액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액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 VI. 요약 및 결론

최근 몇 가지 비중 있는 조세 및 재정지출사업의 도입 및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바 각종 제도의 근본취지 및 근원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발족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바, 기존 세원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어려운 실정에서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세정의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하는 보호의 수준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부합하려면 일정수준의 근로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복지 제도가 일회적이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 초기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대부분의 영미 계통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과약 및 조세징수 능력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무행정기관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본 복지제도가 일회적이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 초기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과약기능이 근원적으로 제고되기 전까지 수혜대상자의 폭을 다소 제한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장애인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다소 제약을 완화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가장 등으로 제한한 후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이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경우,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수혜 수준을 낮추고 NIT의 일종인 EITC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관리 및 임금자료의 국제청 보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면세점 이하 자들에 대한 기록유지 차원을 넘어 기록의 정확성, 진위 여부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이 곧 시행을 앞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반드시 EITC를 위한 추가적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과약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역진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되지만 그럼에도 이들 인센티브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체납액의 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조세행정의 부담을 축소하고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의 일정부분을 이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명백히 허위임이 입증된 신고소득에 기초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하향조정 또는 납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즉, 세무조사의 결과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각출금 또는 수혜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징수문제에 있어 국제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체납문제와 조세의 체납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체납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거나 체납건수 또는 체납액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액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는 조세행정의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해 이에 따라 세제 및 세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세제도 또한 적절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과제로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은 좋으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회 통합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상실 및 수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켜 계층간 갈등이 고조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복지 개혁과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선택문제에 대한 왜곡현상을 보다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철인 · 전영준 · 한도숙, 『포괄주의에 의한 소득세 과세방식 도입』, 한국조세연구원, 1999

전영준,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미발표 논문, 1999.

Atkinson, A.B., "Income Maintenance and Social Insurance," *Handbook of Public Economic*, Vol. 2, 1987.


Boadway R. and C. Katherine, "Monitoring Job Search as an Instrument for Targeting Transfer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6, 1999.

Haveman, R. and W. Barbara, "Welfare to Work in the U.S.: A Model for Other Developed Nati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7, 2000.

Moffitt, B.,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 1992.

Moffitt, R., R. David and W. Mark, "The decline of welfare benefits in the U.S.: the role of wage inequa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8, 1998.

Rocheteau, G., "Can 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Generate Multiple Natural Rat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6, 1999.

Varian, H., "Redistributive Taxation as Social Insu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4, 1980.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는 조세행정의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해 이에 따라 세제 및 세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세정책 또한 적절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1990년대 일본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sup>1)</sup>

金 映 喆 연구원(yck@kipf.re.kr)

朴 宗 奎 연구위원(jkpark@kipf.re.kr)

## I. 서 론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6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금융시장의 붕괴와 아시안 국가들의 경제혼란으로 말미암아 현재 일본의 경제는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거품경제 현상 이후에 1991년부터 시작된 경기의 침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IMF는 지적하고 있다. 1991년과 1998년 사이 8년의 기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1.25%였고 생산량 격차(output gap)<sup>2)</sup>는 1990년 말 전년대비 잠재 생산량(potential output)의 4.5% 포인트이었지만 1998년 초 전년대비 잠재 생산량의 -7.5%포인트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일본의 1990년대 경제 현황을 실물부문, 재정정책 부문, 통화정책 부문, 은행 구조,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견해<sup>3)</sup>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이유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설명

된다.

### 1. 부적절한 정책대응<sup>4)</sup>

1990년대에 일본정부가 경제부흥을 위해 내놓은 대부분의 경기부양정책(fiscal packages)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5년 9월에 시행된 재정팽창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예외적으로 1997년 초 긴축재정정책으로 바뀔 때까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좀더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여가 일본경제의 침체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이 자료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pan: Economic and Policy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99/114, October, 1999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2) 생산량 격차 = 실질 GDP - 잠재 GDP

3) Tamim Bayoumi, "The Morning After: Explaining the Slowdown in Japanese Growth in the 1990s," IMF Working Paper No. 99/13

4) Posen(1998)

## 2. 유동성 함정<sup>5)</sup>

일본은 전통적으로 낮은 소비율을 보여왔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saving rate)로 이어졌다. 높은 저축률은 경제활황기에는 높은 비율의 투자로 이어지지만 경제 둔화기는 저축률과 투자율 사이에 많은 격차를 가져와 균형실질금리(equilibrium real interest)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저물가의 기초를 감안하면 향후의 물가상승률도 낮을 것으로 기록적으로 낮은 장-단기 금리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경제를 완전 고용(full employment)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실질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거의 경기부양 정책은 Ricardian 효과로 인해 한정된 효과를 가졌다)이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저물가 기초로 인해 경제를 침체 상황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힘들다<sup>6)</sup>.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19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6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금융시장의  
붕괴와 아시안 국가들의  
경제혼란으로 말미암아 현재 일본의  
경제는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 3. 과도한 투자로 인한 낮은 자본 회수율<sup>7)</sup>

과거의 과도한 투자가 낮은 자본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저축을 장려했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자산 축적(asset accumulation)을 이룰 수 없었다. 주기적인 경기둔화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부의 효과(wealth effects)는 기업 부문의 비효율성에 의해 연장되고 막대한 양의 기업부채 등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기회가 없는 가운데서는 경

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sup>8)</sup>. 이러한 견해는 저축률과 투자비용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가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4. 금융기관의 문제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 시스템과는 달리 은행이 중요한 금융 중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대출기관 역할을 한다<sup>9)</sup>. 자산가격의 거품(asset price bubble) 시기에 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많은 양의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거품이 건히면서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대출은 정지되었다. 그 결과로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의 한계가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켰고 민간부문이 재정 팽

5) Krugman(1998), Keynes(1936), Hicks(1937)

6) 그러나 전통적인 통화론자들은 유동성의 함정은 착각이고 통화기반(monetary base) 팽창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7) Ando(1998)

8) 또한 어떤 이들은 노령인구는 투자하기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인구의 효과와도 연관지어 언급하고 있다.

9) 금융시스템의 나라간 비교는 Borio(1995) 참조



창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 III. 실물 부문

#### 1. 개요

일본은 현재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장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고 1999년 1분기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기 전까지 전분기 대비 5분기 연속 생산량(output)이 감소했다. 또한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실질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이었다(1980년대는 연평균 4%의 성장을 유지). 1990년과 1991년 사이의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는 1992년 경기를 둔화시켰고 그 후의 경제적 문제와 은행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상승과 낮은 순이익을 유발해 특히 민간투자부문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은행은 대출담보의 가치하락을 겪었고 은행자본(bank capital)은 보유주식(equity holding)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되었다<sup>10)</sup>.

**1990년대 실물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민간투자가 감소되었고  
활발하지 못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공공부문의 투자가 대신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소비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원만하게 성장하다가  
1997~1998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로 인해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은행권에 위기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신용경색(credit crunch)과 금융 압박(financial distress)은 1997년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와 함께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표 1〉 참조). 과거의 거품기간으로부터 남아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과도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과잉자본스톡(stock)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도 연관성이 있다<sup>11)</sup>. 1980년대 후반에는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손쉬운 신용거래, 탄력있는 자본시장 등의 요인들이 1980년

대 후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과도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의 소멸과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로 인하여 사업 투자로 증가된 자본비용의 부정적인 영향은 과도한 생산능력(excess capacity)의 감소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실물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민간투자가 감소(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되었고 활발하지 못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공공부문의 투자가 대신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소비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이후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1997~1998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경기 침체는 1998년에 들어서서 심화되었다. 1998년에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3% 감소하였고 민간 국내수요의 주요 부문들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1998년 4/4 분기에 시작된 공공투자의 개입과 금융규제의 완화에 힘입어 1999년 1/4 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은 1.9%가 증가했다. 또한 1999년 1/4 분기에는 자본가격의 상승과 산업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자로 인한 경기부양 효

10) 일본의 은행들은 기업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분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은행자본으로서 포함시키고 있다.  
11) 1990년대 일본 경제 performance의 자세한 분석은 Bayoumi(1999)와 Ramaswamy and Rendu(1999)에서 논의되고 있다.

과는 1999년 후반부에 효력을 점차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민간 국내수요도 1999년 남은 기간 동안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업구조조정 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등 1999년 경제성장은 완만한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2. 총 수요부문

가. 민간소비

1997년 4월 경기침체의 시작 이래로 민간소비는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소비지출은 1999년 1/4분기 1.25%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7년 1/4분기 대비 여전히 3.25% 낮

은 수준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소비 추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과 1992년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직후 민간 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과 최근 민간소비의 감소 이유에 대한 것이다. 1990년대 초 자산가격 거품의 붕

<표 1> 실질국내총생산과 수요부문(1993~1999)<sup>1)</sup>

(단위: 전년도 대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8				199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민간소비	1.9	2.1	2.9	1.0	-1.1	0.3	-0.1	-0.1	-0.2	1.2
민간 총고정투자	-2.2	2.2	11.8	1.6	-11.8	-4.3	-3.6	-3.3	-5.8	2.3
건설부문	8.5	-6.5	13.6	-16.3	-13.7	0.1	2.1	-6.1	-7.0	1.2
기업(business)부문	-5.3	5.2	11.3	7.1	-11.3	-5.2	-4.8	-2.7	-5.5	2.5
최종민간국내수요	0.8	2.1	5.3	1.2	-4.1	-0.9	-1.1	-1.0	-1.6	1.5
정부소비	2.4	3.3	1.9	1.5	0.7	0.7	0.2	0.8	-0.6	0.8
공공고정투자	2.8	0.6	9.2	-10.4	-0.3	-2.4	-3.0	3.7	10.6	10.3
최종국내수요 <sup>2)</sup>	1.1	2.1	5.3	0.1	-3.3	-0.9	-1.1	-0.4	-0.5	2.2
Stockbuilding <sup>3)</sup>	-0.2	0.2	0.4	-0.1	-0.1	-0.1	-0.1	-0.1	0.0	0.0
민간	-0.3	0.2	0.4	-0.1	-0.1	-0.1	-0.1	-0.1	0.1	-0.1
공공	0.1	0.0	0.0	0.0	0.0	0.0	0.0	-0.1	-0.1	0.1
총 국내수요	1.0	2.3	5.7	0.1	-3.5	-1.0	-1.2	-0.6	-0.5	2.2
무역수지(Foreign balance)	-0.3	-0.8	-0.5	1.4	0.6	-0.3	0.4	0.3	-0.4	-0.2
수출	4.6	5.4	6.3	11.6	-2.3	-2.8	-2.0	1.8	-3.2	-0.3
수입	8.9	14.2	11.9	0.5	-7.5	-1.1	-5.8	-0.1	-0.8	1.8
실질국내총생산	0.6	1.5	5.0	1.4	-2.8	-1.2	-0.7	-0.3	-0.8	1.9
참조 항목										
공공지출 <sup>4)</sup>	2.6	2.0	5.4	-4.5	0.2	-0.8	-1.3	2.1	4.6	5.4
명목국내총생산	0.8	0.8	3.5	1.5	-2.5	-0.3	-0.9	-1.2	-0.7	2.2
GDP deflator (1990=100)	0.2	-0.6	-1.4	0.1	0.3	1.0	-0.2	-0.9	0.2	0.3
생산량 격차 <sup>5)</sup> (percent of potential GDP)	-1.7	-1.9	1.1	0.4	-4.1	-2.7	-3.8	-4.5	-5.5	-4.1

주: 1) 1990년도 물가 기준

2) 최종민간수요 = 민간소비+건설투자+기업고정투자 (business fixed investment)

3) 실질국내총생산증가에 대한 기여

4) 정부소비와 공공투자

5) 생산량 격차(Output gap) = 실질 GDP(real GDP) - 잠재 GDP(potential GDP)

자료: Nikkei Telecom, WEFA, IMF의 추정치("Japan: Economic Policy and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9/114)



과 이후 민간 저축률의 상대적인 안정은 경제활황 기간 동안 가계들이 부채누적을 피하는 것을 반영한다. 1980년대 후반 가계의 부채는 개인 처분소득과 연관해서 볼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이 비율은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sup>12)</sup>.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순이익은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가계의 직접적인 자산보유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은행들의 재무제표상의 자산가격의 하락과 연금과 보험 기금의 실질가치 하락은 부실한 회계기준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감지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자산가격의 주기적인 경기순환(boom-bust cycle)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민간소비의 불안정은 부의 효과와 개인채무(personal indebtedness)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소비의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7년 2분기에 실시된 소비세의 인상이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7년 4월 소비세의 인상 발표 이후 2/4 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5% 감소했다. 그

**일본의 최근  
기업투자 감소 추세는  
제2차 대전 이후 어느 기간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20%이었으나  
1998년에는 16%로 감소했다.  
기업투자는 1999년 1/4분기  
플러스 성장을 이기 전까지  
6분기 동안 연속 감소했다.**

러나 그 이후의 민간소비의 위축은 불확실한 노동시장과 금융압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97년 4/4분기와 1998년에도 지속된 민간소비의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일어난 몇몇 은행과 증권회사들의 부도로 대변되는 불안정했던 금융권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과 소득의 감소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9년 초 민간부문 소비의 상승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1999년도의 민간부문의 소비 상승이 과거의 추세에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최근의 소득

감소 추세는 민간소비가 한동안은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 나. 기업 투자

일본의 최근 기업투자 감소 추세는 제2차 대전 이후 어느 기간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20%이었으나 1998년에는 16%로 감소했다. 기업투자는 1999년 1/4분기 플러스 성장을 하기 전까지 6분기 동안 연속 감소했다. 최근에 와서 기업투자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1997년 1/4분기와 1999년 1/4분기를 비교해볼 때 20% 정도 감소했고 이러한 기업 투자의 감소 추세는 파잉자본 스톡(stock)의 해소 효과, 채무 부담(debt burden)의 효과, 자본가격의 붕괴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시장의 붕괴로 인해 이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신규 투자를 감축했고 1997~1998년 사이의 은행권의 위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의 기업투자의 침체는 중소기업

12) 1985~1990년 사이 일본가계의 부채 비율은 25%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일본처럼 자산가격의 상승기를 겪었던 스웨덴의 경우 가계의 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동안 40% 증가했다.

업들의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있어서 더욱 어려워진 신용상태에 대한 효과를 반영한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은행권의 위기 동안 중소기업들은 신용경색을 겪었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엔을 중소기업의 신용 보증을 위해서 사용했다. 1999년 1/4분기 기업투자의 플러스 증가율은 정부의 신용 보증에 힘입은 중소기업들의 폭넓은 자본 지출을 반영한다.

#### 다. 건설 투자

일본의 최근 건설 투자의 감소 추세는 기업투자의 감소 추세보다 더 심각하다. 1996년 4/4분기 최고점을 기록하였던 건설 투자는 1998년 4/4분기에는 1996년 4/4 분기와 비교할 때 35%가 감소했다. 민간 소비와 마찬가지로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동안의 건설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금융권의 불안한 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1991년 이후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다.

1999년 1/4분기 건설투자는 1.25%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은 주택시장의 부양계획을 담고 있던 1999년 예산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예산은 주택용 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세액공제 대상 용자금액도 3천만엔에서 5천만엔으로 상향조정했다.

#### 라. 공공부문 투자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경기 역행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1996년 중반부터 급격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해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더욱더 감소되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1998년 4월과 11월에 각각 16조엔과 23조엔에 달하는 경기부양계획(fiscal stimulus package)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의 경기부양계획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총투자 금액은 16조엔에 달하고 있고(GDP 대비 3%)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1998년 3/4 분기에서 1999년 1/4분기 사이 20%나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9년 후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1998년 11월에 발표한 경기부양계획의 효력이 약화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했다.

### 3. 노동시장과 물가 추이

#### 가. 노동시장

1990년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998년 급격한 상승을 하기 전까지 실업률은 낮았다. 1991년에서 1997년 사이 평균 실업률은 3% 이하였으나 1998년 초반부터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4월에는 4.8%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의문점은 1998년까지의 낮은 실업률과 최근의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이다.

1991년에서 1997년 사이 낮은 실업률의 주요 원인은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부진에도 불구하고 평생고용(life time-employment)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1998년 은행권의 위기와 함께 심화된 경제 상태는 평생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해주었고 1999년에 와서는 많은 인력 감축이 단행되었다.

고용경향을 보면 증가된 실업률의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 노동시장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임을 말해준다. 취업률은 1999년 1/4 분기에 1.25%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업률의 상승은 없었다. 이것은 노동자



들이 노동인구(labor force)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8년 1월 대비 1999년 5월에 취업률의 5% 감소를 겪은 제조업 부문이 가장 극심한 고용 감축을 겪었다. 건설업 부문도 제조업 부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취업률의 감소를 겪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은 1998년 초부터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임시직(part-time)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부의 잠재적인 수급 불균형이 대두되었다. 구직자들의 구직비율은 1998년 초 0.68에서 1999년 5월에는 0.46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이 기간 동안 신규활동에서의 구직비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부문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악화된 노동시장의 상황은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1991년에서 1997년 사이 소득은 평균 1.75% 증가했으나 1998년에는 증가 속도가 1.25%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2.25% 감소했고 1999년 1/4 분기에는 3.75% 감소하는 등 최근에 와서 소득수준의 악화는 심화되었다. 최근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너스와 초과근무 수당(over time pay)의 감소에 있다.

행정당국은 최근에 노동시장의 경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부문에 의한 더 많은 노력(특히 의료부문이나 직업훈련부문)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동안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이 장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금의 간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임시 고용에 대한 제한의 철폐, 구조조정의 사회비용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강화 방안 등이다.

#### 나. 물가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직후 소비자 가격의 상승률(CPI)은 급격히 감소

했으나 그 이후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1991년에는 3.25%이었던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1994년에는 1%이하로 감소했고 1992~1998 기간 동안 평균 1% 이하였다. 도매가격지수(wholesale price index)는 1998년 4/4분기에 3.5% 하락한 후 1999년 1/4 분기에 다시 4% 하락했다. 그러나 1999년 9월 현재 도매물가지수의 하락은 주로 수입 가격의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의 부재는 아직도 풀려야 할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명목임금의 경직성이 부분적인 해답이 될 수 있고 근래의 경향을 보면 생산시장(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직성이 급격한 물가의 하락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품 가격은 계속 하락했지만 민간 서비스부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가 전망 조사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biases)가 소비자물가지수도 사실상 하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의 몇몇 연구<sup>13)</sup>에 의하면 여러 나라의 경우 소

13) 소비자 가격 상승률 오차에 대한 연구는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97)을 참조하기 바람.

비자물가 지수는 아마도 물가상승률을 과장해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차는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상품의 출시나 물건의 질적인 변화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 IV. 재정정책의 추이

일본은 지난 십년 동안 주로 팽창 위주의 재정정책을 운영해 왔다. 1990년대 중반 공공부문의 지출과 세제 감면 등이 경제 침체기의 충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쓰여져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채무는 증가했다. 1997 회계연도에는 경제활동의 확실한 회복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1997년 후반부에 들어서는 신축적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4월과 11월에 발표된 경기부양계획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시켰고 경기부양 노력들은 재정 투명성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1999회계연도에 발표된 예산안은 경제를 더욱 부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보장부문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에 이를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대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의  
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정부의 국채발행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사업 지출과 감세정책이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팽창정책의 기조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증가시켰다.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순채무가 1999년 회계연도 말에는 GDP 대비 90%에 이를 것으로 보여져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압박은 자극적인 재정정책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확고히 드러난다. 이러한 지방정부들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FILP)를 통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대출요구 및 예탁금 수신(deposit base)의 부진에 직면해서 재무성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관리 당국인 신탁기금 운용국(Trust Fund Bureau)은 국채의 부분적인 회수를 발표했고 이것은 1998년 후반부 이

후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 1. 최근의 경기 부양적인 정책들

일반정부의 재정적자는 1990년 초 급격히 늘어났다. 1990년 초 경제 성장의 둔화와 경기 변동적인 요소, 세수 탄성치(tax elasticity)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적인 정책들이 일반정부의 재정 상태를 1990년 균형재정에서 1996년 GDP 대비 6.5%의 적자 재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반정부의 경기변동적인 요소를 차감시킨 구조적인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1%에서 7%로 늘어났고 사회보장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순채무는 2배가 증가해 GDP의 60%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대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 활동의 부양을 도모하고 있다(〈표 2〉 참조).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정부의 국채발행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사업 지출과 감세정책이다. 공공사업부문은 주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관련된 건설 사업으로서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세입의 감소는 1994년 이후의 몇 차례에 걸친 세제 감축(1994년에 행해진 소득세



적용 구간의 상향 조정과 이듬해 소득세의 감축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세입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거품기간 이후의 소득과 부의 손실과 관련이 있는 1991년에서 1994년 사이 세수 탄성치(tax elasticity)의 급격한 감소이다.

가. 1998년의 경기부양계획

1997년에 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침체기를 맞이하자 정부 당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1997년 12월에 정부 당국은 3.5조엔 규모의 소득세 환급과 감세를 발표했다(법인세율 또한 3% 포인트 감소하여 최고세율이 46%로 조정됨). 그러나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국면을 보이자 1999년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위해 총규모 40조엔에 달하는 두 개의 경기부양 종합계획이 1998년에 실시

되었다.

1998년 4월 16.7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종합계획이 1998년 첫 번째 예산안 발표 직후에 발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에 대한 7.7조엔의 추가적인 지출(이 중 1.5조엔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임), 4.3조엔 규모의 단기적인 감세, 부동산 시장에 대한 2.3조엔의 지원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2조엔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른 부문에

〈표 2〉 경기부양계획 요약(1993~1998)

(단위: 조엔(trillions of yen))

	1993		1994 2월	1995 9월	1998	
	4월	9월			4월	9월
총 경기 부양 종합 계획 (GDP 대비 퍼센트)	13.2 (2.8)	6.2 (1.3)	15.3 (3.2)	14.2 (3.0)	16.7 (3.3)	23.9 (4.8)
세제 감축 (GDP 대비 퍼센트)	0.2 (0.0)	0.0 (0.0)	5.9 (1.2)	0.0 (0.0)	4.6 <sup>1)</sup> (0.9)	6.0 <sup>2)</sup> (1.2)
공공 투자 <sup>3)</sup> (GDP 대비 퍼센트)	7.6 (1.6)	2.0 (0.4)	4.5 (0.9)	6.5 (1.4)	7.7 (1.5)	8.1 (1.6)
토지 매입 <sup>4)</sup> (GDP 대비 퍼센트)	1.2 (0.3)	0.3 (0.1)	2.0 (0.4)	3.2 (0.7)	1.6 (0.3)	N/A N/A
주택대출공사에 의한 대출 <sup>5)</sup> (GDP 대비 퍼센트)	1.8 (0.4)	2.9 (0.6)	1.2 (0.3)	0.5 (0.1)	0.0 (0.0)	1.2 (0.2)
정부계열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GDP 대비 퍼센트)	2.4 (0.5)	1.0 (0.2)	1.5 (0.3)	2.6 <sup>6)</sup> (0.5)	2.0 (0.4)	6.9 (1.4)
기타 (GDP 대비 퍼센트)	0.0 (0.0)	0.0 (0.0)	0.2 (0.0)	2.6 (0.5)	0.8 (0.2)	1.7 (0.3)

주: 1) 복지 혜택 부문의 3천억엔 포함.

2) 이후에 9조 3천억엔으로 증가 (GDP의 1.9%).

3) 공공 투자는 일반 공공사업(토지 매입 포함), 재해 복구, 건물과 설비 및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공공 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 사업 지출에 포함되어있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매입은 제외된다.

5) 연금 혜택 서비스 공사(Pension Welfare Service Public Corporation)에 의한 대출금 포함.

6) 소기업을 위한 일본공사(Japan Corporation)에 의한 1조 3천억엔을 포함.

자료: 일본의 행정당국(Japan authorities)과 IMF의 예상치("Japan: Economic Policy and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9/114)

대한 4.7조엔 규모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예산 편성과 함께 1998년 11월에 발표된 총 23.9조엔에 달하는 두 번째 경기부양종합계획은 정보통신과 같은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8.1조엔 규모의 추가적인 지출, 1999년에 6조엔 규모에 상당하는 소득세율의 감축, 고용창출과 재교육 계획 및 실업 혜택의 연장 등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는 1조엔의 가치에 달하는 고용의 창출, 아동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계에 대한 총 7천억엔 규모의 물품구매권(voucher) 지출,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은행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5.9조엔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1조엔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나. 1999년의 예산

1999년 예산에서 정부 당국은 1998년 경기부양계획에 포함된 소득세 감세 외에 추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 감세 계획은 9조엔의 감세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 7조엔 규모가 1999년에 실행될 계획이고 나머지 2조엔은 향후 15년간 실행될 계획이다.

경기부양계획에 포함된 개인과

**일본의 2000년도  
기본적인 재정운용 정책방향은  
민간부문의 수요에 따른 유동적인  
경제운용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용정책은 공공부문의  
수요로부터 민간부문의 수요로  
초점을 맞추어서 민간부문의 수요에  
따른 경제회복과 국가 전반에 걸친  
시인 경제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 소득세의 감세와 더불어 건설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 개인소득세에 대해 최고 한계세율을 65%에서 50%로 항구적으로 감면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4조엔의 소득세 경감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당국은 법인세제를 통합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최고 한계세율이 46%에서 40%로 인하되었고 순감세 효과는 2.3조엔에 달했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세율 인하도 행해졌다.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mortgage 보유자의 기간이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고 세액공제 최고 한도는 3배로 늘어났다. 또한 금융시장의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의 철폐를 1999년 12월에서 4월로 앞당겼고, 금융채

(Finance Bill)와 재무성 채권(Treasury Bill)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폐지되었고 1999년 9월부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채에 대한 원천 징수세가 면제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1999년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9년 예산은 감세와 더불어 추가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1조엔의 투자 등 1998년 11월의 경기부양계획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예산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의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적인 연금 기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8.5%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연금혜택의 1/3을 정부가 부담하던 것을 2004년까지 1/2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연계 연금)에 대한 부담률 인상(기본 급여의 17.35%에서 19.5%)을 1999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했다.

이러한 예산안의 결과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 근거한 일반 정부의 적자(사회보장 제외)는 1998년 GDP 대비 8.3%에서 1999년 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표 3〉 참조) 구조적인 적자(사회보장 포함)는 GDP의 1%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14)</sup>.

다. 2000년의 예산

일본의 2000년도 기본적인 재정 운용 정책방향은 민간부문의 수요에 따른 유동적인 경제운용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용정책은 공공부문의 수요로부터 민간부문의 수요로 초점을 맞추어서 민간부문의 수요에 따른 경제회복과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 경제적인 구조 조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예산기조에 부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도 일반지출은 85조엔(1999년 예산에서 3.8%증가)이 될 것이고 국채발행 규모는 32조 6천억엔이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총지

출 대비 국채발행 규모는 38.4%에 달한다. 또한 경제부흥의 노력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9조 4천억엔의 지원(1999년과 동일)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부흥을 위해 추가적으로 5천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금융환경과 관련하여 총 4조 5천억엔이 국가채무 통합 기금(National Debt Consolidation Fund)에 편입되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상환에 대비하고 있다.

중점지출 분야로는 분배 효율성의 향상, 환경, 정보통신 그리고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2,500억엔을 지출할 계획이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사업에 3천억엔을 지출할 계획이다.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최근의 팽창 재정정책 기조를 지원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반영할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노력들에 중요한 책임을 맡아 왔다. 중앙정부의 경기부양계획들은 지방정부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공공사업의 시행은 포괄적인 지방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었고(일반정부 총 공공사업의 80%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경기부양계획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감세 방안은 지방양여세의 축소와 지방세의 감소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에

<표 3> 일반정부의 운영 현황(1996~1999)

(단위: GDP 대비 %)

	1996	1997	1998(잠정치)	1999(예상치)
일반정부 계정(General government balance)	-4.1	-3.4	-6.1	-7.6
세입(Taxes)과 범칙금(Fines)	18.1	18.3	17.6	16.8
소비(Consumption)	9.6	9.9	10.1	10.2
투자(Investment)	6.2	5.7	6.2	6.2
일반정부 계정에서 사회보장부문 제외	-6.6	-5.9	-8.3	-9.7
구조적인 계정(structural balance)의 변화 <sup>1)</sup>	-1.0	1.6	-1.5	-1.0

주: 1) 사회보장부문 포함

자료: IMF 추정치 (Japan: "Economic and Policy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9/114, October 1999)

14) 이 예상치는 실업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1999년 6월 11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된 5,200억엔(GDP의 0.1%)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로 지방정부의 총채정적자는 1990년에서 1997년 사이 대략 2배가 되었다. 결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총적자는 1990년 GDP의 1%였으나 1995년에는 GDP의 3%였고 1997년에는 GDP의 2%였다. 지방정부 적자의 규모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지출의 증가에 의해 유발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었고 세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는 지방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1990년 GDP의 15%에서 1997년 말 GDP의 30%로 증가하게 되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1990년 GDP의 1.5%에서 1997년에 GDP의 2%)이 증가했다.

가. 1998년 이후 지방정부의 현황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1998년 초부터 심화되었다. 1998년의 지방재정계획은 성장하는 경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었고  
세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는  
지방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1990년 GDP의 15%에서  
1997년 말 GDP의 30%로  
증가하게 되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증가했다.**

제에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로 인해 인건비와 이자지급의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총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경제는 침체를 맞이했고 1998년 4월 경기부양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적인 감세 방안으로 인하여 예상된 세입의 증가보다 미미한 수준의 세입이 유입되었다. 1998년 지방세입은 전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연초 예상치보다는 2.5조엔(GDP의 0.5%) 가량이 감소했다.

감소한 2.5조엔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감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9년에는 1998년 11월에 발표된 경기부양종합계획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줄어든 세입이 예측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FILP)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교부세(tax allocation grants)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세입에 의하여 충당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를 위해 약 4조엔의 추가적인 기금이 신탁기금 운용국(TFB)으로부터 지방 교부금 특별회계(Special Account for Local Allocation Tax)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었다(〈표 4〉 참조). 1999년에도 지방세입의 감소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금 특별회계에 대해 8.5조엔(GDP의 1.7%)규모의 신탁기금 운용국의 대출이 계획되었다.

〈표 4〉 지방교부금 특별회계에 대한 신탁기금 운용국의 대출 추이

(단위: 조 엔)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sup>1)</sup>	1999 <sup>2)</sup>
순 대출금	-1.5	-0.8	1.5	1.6	3.7	4.2	3.7	1.8	3.5	8.4
잔고	1.5	0.7	2.2	3.8	7.5	11.7	15.4	17.1	20.7	29.1

주: 1) 잠정치, (2) 예산액  
자료: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운용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재정 관리와 준(準)재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체신예금 및 공공연금을 포함해서 대략 일본 예금의 1/3 가량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기금 중 대부분이 재무성의 신탁 기금국(Trust Fund Bureau, TFB)에 의해 운용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통하여 투자되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일반정부의 공식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투자계획은 매년 예산편성과 밀접하게 짜여진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많은 부분이 공공부문사업의 장기적인 대출을 위해 쓰여진다. 신탁기금 운용국의 포트폴리오(portfolio) 중 3/4 가량(약 440조엔, GDP의 90%)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은 국채(주로 장기 국채)에 투자된다.

1998년의 경기부양정책들은 경제내의 신용상태를 향상하고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대출금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경정된 1998년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산은 정부금융기관에 대해 3조엔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방정부

에 대해 추가적으로 2.5조엔의 장기 대출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4. 일본의 재정 투명성

경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근 들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확고하지 못한 재정기조는 경기부양계획의 필요성과, 규모 및 효율성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Posen, (1998)).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보의 결여는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시장과 생산품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재정 투명성의 기초가 되는 일본의 회계시스템은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의 재정계정의 복잡한 나열은 높은 수준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의 적절한 거시적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재정운영의 예상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외부의 사람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가늠하거나 회계연도 내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거나 최근의 재정 추이를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더욱이 중기재정전망은 부족한 정보와 함께 실시된다. 주요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 장기간의 자료 수집 기간: 일본 정부는 매월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자료를 발간한다. 그리고 추가 자료는 매년 예산에서 제공하지만 중앙정부나 일반정부의 통합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계정을 총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기간 정부운영에 대한 통합계정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국가계정을 통해 12개월 후에나 발표된다.
- 현재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정보의 한계: 예산 책자는 예산안에 포함된 통합재정 현황에 대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또한 재정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시로 편성되는 추가 예산이 분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해 연내에 행해지는 분석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세부적인 중기 재정전망의 부족: 정부 당국은 여러 거시경제 가정에 근거한 중기 재정적자와 채무 시나리오(debt scenario)를 발표한다. 그러나 조세와 이자 지급을 제외한 중기 전망은 현재의

정책과 의지를 반영한 미래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아니라 여러 가정 하의 기계적인 외삽법 (mechanical extrapolation)에 의해 산출된다.

- 준(準) 재정 운용의 광범위한 사용: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예산 범위 외의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졌다. 더구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운영에 있어서 상세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 현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채무 불이행 비율(default rate)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의 위험성을 산출하기 어렵다.

재정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관들에 대한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장애가 되는 부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총세입과 세출의 파악이 어려운 개별 정부부문의 감독 아래 있는 특별회계의 중요한 역할 2) 연초 예산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되는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근 들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확고하지 못한  
재정기조는 경기부양계획의  
필요성과 규모 및 효율성에 대해  
인의감을 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 3) 대부분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관들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

## V. 통화 부문

### 1. 통화 정책의 추이

금융시장은 지난 기간 동안 상당히 불안정했다. 1998년 6월 말부터 시작된 장기신용은행의 폭넓게 알려진 문제가 은행권의 악화에 대한 염려를 높였다. 1998년 8월과 9월의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은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과 유동성 수요를 더욱 상승시켰다. 이러한 통화 상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콜금리(overnight call rate)를 1998년

9월 9일에 0.5%에서 0.25%로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 조달의 염려가 1998년 후반과 1999년 초반 국제수익률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이러한 국제 수익률의 상승은 다른 주요 은행들이 채권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제한하려는 욕구에 의해 가속화되었고 유동성 포지션(liquidate position)으로의 쇄도는 현금 시장을 포함하는 다른 시장으로도 퍼져서 엔화가치에 대한 상승 압박을 유발했다.

엔화가치의 상승은 명목통화상태지수(nominal monetary conditions index)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긴축통화상태를 유발했다<sup>15)</sup>.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1999년 2월 12일 콜금리를 최대한으로 낮추었다. 화폐시장(money market)에 대한 영향의 염려로 인해 중앙은행은 먼저 콜금리를 0.25%에서 0.15%로 낮추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를 시도했다. 1999년 2월 12일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콜금리는 0.15%로 하락했고 2월말까지 0.1%에서 0.15%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다 3월에 콜금리는 0.03%에서 0.05%로 하락했고 4월 초까지 0.03%로 유지되었다. 현재 중개기

15) 통화 상태 지수는 단기금리와 환율의 가중 평균치이다(Lipworth and Meredith, 1998 참조).



관들의 수수료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콜금리는 0%이다. 결국 1999년 4월 중순에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염려가 잠식될 때까지 현재의 0% 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0%인 콜금리는 콜 머니(call money) 시장의 위축을 유발했다. 콜 머니(call money) 시장의 규모는 1999년 2월 35조엔에서 1999년 6월 20조엔으로 감소했다. 중앙은행은 콜 머니 시장의 추가적인 위축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은행들이 유동성의 수요를 잘못 판단했을 때에는 콜 머니 시장의 불안정함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들이 콜 머니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없다.

팽창 통화정책의 기초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monetary base)의 증가는 지난 기간 동안 불안정했다. 1998년 후반부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기간동안 본원통화 증가율은 8~10%이었으나 1998년 12월과 1999년 1월에 은행권에 대한 신뢰회복의 증가와 연말 보너스 지급의 감소로 인해 본원통화의 중요 요소인 통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확고히 하는 것은 향후 가격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므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저성장 목표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기와 같은 경우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때로는 유익할 수 있다.**

수요는 하락했다. 1999년 2월 완화 정책에 힘입어 본원통화의 성장은 금융위기 이전인 7%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통화 증가는 4~5% 수준에서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통화기조의 완화 자체 만으로도 총수요가 자극되어져서 은행대출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통화기조의 완화는 은행의 유동성을 향상시켜 은행대출을 증가시킨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통화기조의 완화는 은행들의 보유주식 가치를 높여서 은행의 지불 능력을(solvency) 향상시킨다. 그러나 은행권의 취약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화 정책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효과가 없었다<sup>16)</sup>. 그러므로 건설한 기

업들이 대출을 연도록 돕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을 사용했다. 1) 대출 보증의 확대 2) 정부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의 확대 3) 민간 은행들에 자본투입(recapitalization)을 하기 위한 공적 자금의 사용 4) 기업부채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도입.

2.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확고히 하는 것은 향후 가격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므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저성장(low plus)목표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기와 같은 경우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때로는 유익할 수 있다(Fischer, 1994 and 1996). 그리고 명목금리 최저치를 0으로 정하면 기대 물가상승률 (expected inflation)이 0이나 그 이하인 경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Summers, 1991)<sup>17)</sup> 디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는 플러스 물가

16)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MF에서 발간한 Selected Issues paper 에서 Morsink와 Bayoumi에 의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17) Krugman(1998)은 생산량 격차감소에 필요한 실질금리의 하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4%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승률은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 지수의 상향조정된 오차 때문에 저성장 물가 상승률을 채택하여야 한다.

현재 콜금리가 최저이므로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운용목표 수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단기금리의 목표치 수정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그러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현재 최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중기금리나 통화 기반에 관련된 수치들의 목표치를 발표하는 것이 있다.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본원통화의 관리 방법과 금리가 0%일 때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본원통화의 증가 여부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0%일 때 본원통화의 수요는 결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일본은행들은 지준금(excess reserve)을 증가하는 대신에 화폐시장 중개인에게 맡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유동성의 투입이 본원통화를 상승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본원통화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수요에 큰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sup>18)</sup>.

## VI. 은행권과 관련된 문제들

일본정부 당국은 지난 기간 동안 은행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괄적인 체제를 도입했다. 1998년 6월에 설립된 금융감독원(FSA)의 관할아래 규제와 감독이 향상되었다. 1998년 10월에는 법령이 제정되어 은행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적기금이 증가되고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 조건이 강화하고, 부실은행을 국유화하기 위한 수단이 설립되었다. 향후 은행권에 남겨진 과제는 대출금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와 자본악화의 기타 원인을 논의하고 주요 수익률을 회복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이후 제한적인 예금보험제도의 재도입이 계획된 것을 감안할 때 은행권 부문에서의 개선은 중요하다.

### 1. 개요

1998년 내내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에 대한 금융적인 건실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악화되었다. 은행주

식 가격은 하락했고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었고 공적 지원금의 폭은 넓어졌고 일본 주요 은행들의 가시화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계획에 대한 정치적인 교착 상태(deadlock)는 시장의 긴장 상태를 심화시켰다. 은행권의 증가하는 어려움에 부응하여 은행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체제가 1998년 10월에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2개의 주요 은행이 1999년 후반기에 국유화되었고 나머지 주요은행들도 1999년 3월에 공적자금을 통해 자본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1998년 가을과 여름에 모든 주요은행들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했고 1998년 겨울과 1999년 봄에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가 은행 자산 가격을 강화했고 중앙은행에 의한 많은 양의 기금은 위험부담금의 소멸을 유도했다.

1999년 3월 모든 주요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10%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1998년 동안 주요 은행들의 실적은 취약했고 대출 손실금은 10

18) IMF의 *Selected Issues paper* 에서 Morsink and Bayoumi(1999)의 연구에 의하면 콜금리의 상승 후 본원통화의 증가는 경제 활동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조엔에 달했다. 1990년 4월까지의 누적 대출손실은 47조엔(GDP의 9.5%)이 넘었다. 이러한 대출손실금은 영업순이익의 거의 4배였다.

은행들의 순손실은 2.5조엔의 이연된 공제세액의 산입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더욱 많았다. 1999년 3월 기준으로 공제자금과 이연된 세액은 기본자본(Tier-1)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의 은행권 문제는 최근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거시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금융중개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취약한 은행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 무수익 여신과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은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보상되지 않은 여신 손실의 규모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은 아직 불안정하며 이것은 대규모의 이연된 공제세액과 보유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장부상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 이자 수익이 적은 대규모의 기업

대출로 인하여 주요 수익률은 취약하다.

무수익 여신과 부실여신에서 발생할 보상되지 않을 손실의 규모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금융구조조정 위원회(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ssion, FRC)와 중앙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9월을 기준으로 모든 은행 대출금의 보상되지 않은 손실의 규모는 14조엔 정도이다. 만일 신용협동조합의 보상되지 않은 손실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의 규모는 17조엔에 달한다.

또한 은행이 발표한 높은 자본비율(capital ratio)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염려가 남아있다.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3월 10.3%의 자본비율을 발표했으나 1998년 10월 2.5조엔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은행자본의 이러한 총체적인 악화가 7개월 동안 일어났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신용은행의 도산은 측정된 자본 적정률이 은행의 실질적인 금융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대출손실 준비의 부족함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타 4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 이연된 세액 자산: 대손충당금이

마련된 대출금의 손실에 대한 향후의 세액 공제와 관련된 이연된 세액 공제액은 1999년 3월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기본자본의 약 1/3 가량이 된다. 이러한 공제된 세액의 산입은 향후의 과세대상 소득에 달려 있다는 것과 은행의 수익률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5년 동안 과세대상 이윤에 대해 공제세액을 이연한다는 법적인 한도는 너무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연할 수 있는 공제세액은 기본자본의 10% 또는 1년 동안의 과세대상 이윤 중 작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 보유증권에 대한 현실화하지 않은 손실: 은행들은 보유증권의 가치를 시장가나 매입가 이하가 아닌 매입가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의 보유증권에 대한 현실화하지 않은 순이익은 1999년 3월 기준 2.1조엔에 달하지만 몇몇 은행들은 상당한 금액의 현실화하지 않은 손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은행들의 대규모 주식보유는 시장위험에 대한 상당한 노출을 의미한다.
- 자본 적정률: 국내 은행업무에 대해서만 4%의 자본 적정률이 적용된다. 주요 은행들을 포함해서 일본은행들이 국제적인 업무

를 하기 위해서는 8%의 자본 적정률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121개 은행 중 절반 이상이 1999년 3월 기준으로 8% 이하의 자본 적정률을 가지고 있다.

- 취약한 수익률: 취약한 수익률은 높은 비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본에 비해 낮은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대비 수익률(return on asset)은 미국은행들의 자산대비 수익률의 절반의 1/3 정도이다. 주요 은행들의 낮은 수입의 주요 원인은 주요업무가 이자 수익이 낮은 기업 대출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 수익활동의 확장: 주택 대출, 소기업에 대한 대출, 현금 자동지급기와 업무 시간의 확장, 개별적 은행서비스(private banking service) 지원, 투자신탁 상품의 판매 등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총 수입은 평균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비용 절감: 인건비의 삭감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운영비는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은행지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

**일본인 은행권 문제는  
최근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추억만 거시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금융중개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추억만  
은행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상되고 있다.

- 전략적 제휴: 은행들간의 전략적 제휴가 기대된다 (예: Mitsu이 신탁과 Chuo 신탁은 2000년 4월에 합병할 계획이다).
- 재무재표의 조정: 무담보 여신을 부동산 담보가 있는 여신과 함께 패키지(package)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증가시킬 계획이고 몇몇 은행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다.

1998년 6월 채무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가 개편되었다. 은행들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러한 우호적인 세제 개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해결 방안이 총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주요 은행들과 보험회사는 1998년 부채의

1.9조엔을 감소시켰다. 또한 1998년 10월 은행법은 민간 채무회사회사를 적법화하여 부실대출 해결을 촉진했다. 그러나 강화된 감독에도 불구하고 은행자산과 부실대출의 해소에 대한 염려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다.

- 여신분류와 규정 기준을 강화할 수가 있다.
- 자본의 적정성 요구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 이연된 공제세액의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은행에 대해 최소 자본 비율을 8%로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 문제은행에 대한 방문조사의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 업무의 강화이다.
- 여신분류 기준과 일치된 자동 세액공제의 특별규정을 통해 채무 관리가 장려될 수 있다.
- 공시 기준은 빈도수를 높임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예: 연중 2번에서 분기별로의 전환).

## Ⅶ.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구조조정과 규제완화의 노력들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조적인 요소들이 경제 활동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아래 1993년



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시행했다. 또한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개혁법(Administrative Reform Act)이 1998년에 제정되어서 1999년 현재 22개의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일본의 규제완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의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이 총체적인 계획 대신 세부적인 법규에만 집중하여 규제완화가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했다<sup>19)</sup>.

1998년 4월 외환거래 관련 법규가 거의 폐지되었다. 이전에는 외환업무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이나 다른 몇몇 회사들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공식적인 외환 거래기관이 폐지되고 모든 회사와 개인이 외환을 사거나 통화 스왑(currency swap)이나 선물(forward)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또한 내국인간의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외환거래가 자율화되었고<sup>20)</sup> 내국인에 의한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 증권에 대한 투자가 모든 증권회사에서 허용되어 지정증권회사제도가 폐지되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부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무수의 여신과  
부실여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채무자본스왑에 대한 감세와  
유가증권화의 촉진이 요구된다.**

또한 채권발행 관련 법규도 폐지되어 내국인에 의한 해외나 유로엔(Euroyen) 시장에서의 해외 또는 유로엔(Euroyen) 채권발행이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엔화 표시 채권발행의 경우도 사후 신고제로 변환되었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부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무수의 여신과 부실여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채무자본스왑(debt-equity swap)에 대한 감세와 유가증권화(securitization)의 촉진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 기관들의 기술혁신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과 상법 개정에 의한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교육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 체계와 채권 발행을 분산화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고 중립적이고 보상적인 조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을 감소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 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출 프로그램과 재정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필요하고 국민연금과 의료 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혜택은 일반 세입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나머지 부문의 국민연금 혜택에 대해서는 30년 내로 민영화되어야 한다.

19) The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Japan, 1999.

20) 1998년 4월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100만엔 이하의 대출, 대부금만이 승인절차 없이 허락되었다.

## 참고문헌

- Ando, Albert, "Demographic Dynamics and the Causes of the Japanese Recession," unpublished mimeo,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8.
- Bayoumi, Tamim., "The Morning After: Explaining the Slowdown in Japanese Growth in the 1990s," IMF Working Paper No. 13, January 1999.
- Bayoumi, T., "The Japanese Fiscal System and Fiscal Transparency," in B.B. Aghevli, T. Bayoumi, and G. Meredith (eds.), *Structural Change in Japan: Macroeconomic Impact and Policy Challenges*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 Borio, Claudio, "Credit Characteristics and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in Fourteen Industrial Countries: Facts, Conjectures, and Some Econometric Evidence," in K. Alders, K. Koedijk, C. Kool, and C. Winnder (editors), *Monetary Policy in a Converging Europe*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 Fischer, Stanley, "Modern Central Banking," in Forrest Capie, Charles Goodhart, Stanley Fischer and Norbert Schnadt (eds.), *The Future of Central Banking*(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ischer, Stanley, "Why are Central Banks Pursuing Long-Run Price Stability?," *Achieving Price Stabilit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99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May 199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apan: Economic and Policy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9/114, October 1999.
- Hicks, John, "Mr. Keynes and the Classics: A Suggested Reinterpretation," *Econometrica*, 6, 1937, pp. 147~159.
- Keynes, John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1936.
- Krugman, Paul R.,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8.
- Lipworth, Gabrielle and Guy Meredith, "A Reexamination of Indicators of Monetary and Financial Conditions," in Bijan B. Aghevli, Tamim Bayoumi, and Guy Meredith (eds.), *Structural Change in Japan: Macroeconomic Impact and Policy Challenges*(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 Ministry of Finance, "Steady Approach for Economic Recovery," Japan, January 2000.
- Oishi, Ichiro and Christopher Towe, "Governance, Deregul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 *Japan-Selected Issues*, IMF Staff Country Report 98/113 (Washington: IMF), 1998.
-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Japan*, Paris, 1999.
- Posen, A., *Restoring Japan's Economic Growth*,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 Ramaswamy, Ramana and Christel Rendu, "Japan's Stagnant Nineties: A Vector Autoregression Retrospective," IMF Working Paper 99/45, 1999.
- Summers, Lawrence, "How should Long-Term Monetary Policy Be Determined?,"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3:2, August 1991, pp. 625-631 . IMF

# 주요국의 조세제도

## - 영국의 조세제도(1) -

李 哲 印 전문연구위원(cilee@kipf.re.kr)

### 1. 영국의 조세체계

영국의 조세제도는 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오랜 전통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각국의 조세제도에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또한 세목의 종류면에서 볼 때 영국과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직접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유류수입세, 상속세, 자본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관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는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적으로 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 반면 직접세의 경우 매년 세율이 개정되는 연간세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을 국민보험기여금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연금구좌

에 적립되는 소위 '적립방식'이 아니라 정수한 금액을 사회보장 수요자에게 재분배하는 구조인 '부과방식'이다. 따라서 국민보험기여금 수입은 조세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체 재정수입의 69.3% 정도(2000년 예산)가 조세수입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국민연금기여금수입, 국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흔히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서로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조세체계가 세목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나 개인들의 납세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상이한데 이는 아마도 오랜 전통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신고방식에서는 개인 스스로 과세대상소득을 모두 열거한 후 합산 및 공제단계를 거쳐 세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반면<sup>1)</sup>, 영국의 경우 매우 복잡한 세액산정방식 때문에 개인들은 누락하기 쉬운 소득들을 열거해 놓은 신고서에 단순히 공란을 메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신고를

끝내고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국세청(Inland Revenue)은 최종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sup>.

조세관련 업무 중 직접세 관련 업무는 내국세청에서, 과세를 포함한 간접세 관련 업무는 관세·간접세청에서 관할한다. 자동차세는 교통성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보험기여금은 사회보장부를 대신해서 내국세청이 일괄 징수한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31.4%(2000년 예산)이며 지출에 대한 과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이 그 뒤를 이어 6.2%(2000년 예산) 정도이며 주민부담금 및 카운슬(council)세가 가장 낮다.

## II. 소득세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명목으로 한 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영구적으로 정착된 영국의 근간세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

**전체 재정수입의 69.3% 정도  
(2000년 예산)가 조세수입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국민연금기여금수입, 국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득세의 특성 때문에 정착이 어려웠고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되었다. 시행시 어려움을 줄이고자 다양한 소득들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

하여 이들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세웠다. 최근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 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적 과세를 하고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 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단, 흔히 분리과세가 세원이 협소한 과세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영국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주가 매우 넓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단일세목으로서 세수비중이 25.88%(2000년 예산)로서 가장 높다. 소득세의 과세베이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현금소득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s in kind)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연료비, 회사가 제공하는 저울 또는 무이자 대부, 무상주택에 따른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연간공제액 7,100파운드를 초과하는 순자본이득(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차감한 부분)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단기매매에 따른

1) Form 1040 신고서 및 해설서 참조

2) Inland Revenue Tax Return, Tax Return Guide Book 및 Tax Calculation Guide 참조

주식양도차익은 자본 이득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력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 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해오고 있다. 과세연도에 6개월이상 영국 내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영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조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 1. 소득의 범주

소득의 종류는 크게 아래 6개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를 각각 A형태(Schedule A)에서부터 F형태(Schedule F)라 정의한다. A항은 토지와 건물로부터 얻는 임대소득, B항은 사업성 산림소득, C항은 영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공채 및 공공채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D항은 자영자소득과 사업소득을 포괄하여 6개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E항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F항은 배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임대소득: A형태(Schedule A)
- 사업성 산림소득: B형태(Schedule B)
- 국공채 및 공공채로부터 얻는 소득: C형태

**최근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 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해낸 후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적 과세를 하고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 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Schedule C)

- 자영자소득과 사업소득: D형태(Schedule D)-6 가지

- 상업이익(trade profits)
- 기타 전문직 이익(profits of a profession or a vocation)

- 이자소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
- 해외 민간주식과 채권수익(foreign securities)
- 기타 해외소득(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
-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E형태(Schedule E)

- 사무실, 고용 및 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외국고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배당소득: F형태(Schedule F)

- 영국거주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수취

현재 B와 C형태의 소득구분은 폐지되어 4가지 형태로만 소득을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 분류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하여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의 일대일 합산과세는 아니

다. 특히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이라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하여 1962년 이후에서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에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7,1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과 방법상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소득세 징수시점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E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PAYE(pay as you earn)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나 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사후정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 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게 하고 단지 다양한 소득을 보고만 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를 종결한다.

이상에서 보여준 총소득의 기준은 영국의 세법 및 세무회계적 측면에서 소득을 구분한 것이므로 1999~2000년도 소득세 신고양식에 의거하여, 보다 경제적 구분에 부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총소득**

- 임직원 급여
- 주식옵션 급부
- 자영업자 수입

**자본이득의 경우 소득이라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하여 1962년 이후에서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에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7,100파운드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있다.**

- 합자회사 지분 수입
- 국내 토지 등 재산소득
- 해외원천소득
- 투자조합 및 재산 투자 관련이득
- 국내 이자소득(세전 금액)

- 배당과 세액공제
- 연금 등
- 특별행사이득, 유지보수 및 별거금 (Chargeable Event Gains, Maintenance and Alimony)
- 기타소득

**2. 과세대상소득**

총소득에서 아래의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구한다.

- 손실
- 외국세액납부
- 개인연금지불액
- 대출금 이자지출
- (이혼자의) 생계부양비
- 주기적 기부금 및 지원금 (Deeds of Covenant and Gift Aid payments)
- 노조원사망급여 (trade union death benefit payments)
- 인적공제
- 연령관련 공제

- 맹인공제
- 임시수당(transitional allowance)
- 배우자의 맹인공제 이전

### 3. 중간세액의 산정

과세대상소득에서 다음의 방식으로 일차 세액을 구한다.

이상의 기초공제 항목들 중 몇 가지 중요한 공제항목들의 규모를 <표 1>에 정리하기로 한다.

#### 가. 일차 세액

- 비저축소득 등에 대해서는 차등 세율: 10, 23, 40%를 적용한다.

<표 1> 개인소득세 기초공제

(단위: 파운드)

세 율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기본공제	3,765	4,045	4,195	4,335	4,385
부부추가공제	1,790	1,830	1,900	1,970	2,000
노령자(65~74세)					
기본공제	4,910	5,220	5,410	5,720	5,790
부부공제	3,115	3,185	4,965	5,125	5,185
노령자(75세~)					
기본공제	5,090	5,400	5,600	5,980	6,050
부부공제	3,155	3,225	5,025	5,195	5,255
노령자공제 · 소득상한	15,200	15,600	16,200	16,800	17,000
맹인	1,250	1,280	1,330	1,380	1,400

자료: FSBR,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1996~97 (1995), 1997~98 (1996).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of UK, Budget 99, Budget 2000.

<표 2> 개인소득세 세율

(단위: 파운드)

세율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기초세율 10%				0~1,500	0~1,520
저세율 20%	0~3,900	0~4,100	0~4,300		
기본세율 22%					1,521~28,400
23%		4,101~26,100	4,301~27,100	1,501~28,000	
24%	3,901~25,500				
고세율 40%	25,501~	26,101~	27,101~	28,001~	28,400~

자료: FSBR,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1996~97 (1995), 1997~98 (1996).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of UK, Budget 99, Budget 2000.

- 저축소득에 대해서는 차등 세율은 10, 20, 40%를 적용한다.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 32.5%를 적용한다.

**개인의 대표적 소득인  
비저축소득의 경우  
<표 2>의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데 매년 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보험료 부과액 계산
- 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 위에서 구한 '조정 후 소득세'에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소득세

개인의 대표적 소득인 비저축소득의 경우 <표 2>의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데 매년 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와 사회보험료를 구한다.

**나. 세액공제**

위에서 구한 일차세액에 다음의 조정을 가한다.

- Top Slicing Relief
- 벤처기업투자조합 세액공제
- 대출금 이자 세액공제
- 부부세액공제
- 배우자 잉여세액공제 이전분
- 추가인적공제
- 미망인 공제
- (이혼자) 생계부양비 공제
- 개념적 세액(Notional Tax)공제<sup>3)</sup>
- 해외소득 세액공제
- 배당에 대한 일부세액공제(non-payable tax credits on dividends)
- 기부 및 증여관련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미납소득세 가산
- 다음의 원천에 따른 세액공제
  - 임직원 급여
  - 자영업자 소득
  - 합자회사 사원소득
  - 국내 토지 등 재산에 따른 소득
  - 해외소득
  - 투자조합과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
  - 국내 이자
  - 국내 연금
  - Void ISAs
  - 기타소득

사회보장 보험료는 <표 3>의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보험기여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재분배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특징으로서 기여금의 소득대비 비중(기여율)이 피고용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기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는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게 기여율이

3) 파세대상 특별행사소득(event gains), 소액배당, 이자, Lloyd's 등이 이에 해당됨.

〈표 3〉 피고용자 국민보험료

(단위: 파운드, %)

주 당 소득	기 여 율	
	피 고 용 자	사 용 자
~71(69)	0	0
71(69)~90(87)	0	0
90(87)~590(575)	10	11.8(11.9)
590(575)~	0	11.8(11.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1999년도 수치임.

자료: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of UK, *Budget 2000*.

높으며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 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최종결정액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에 자본이득세 및 기지급 및 미지급세액을 고려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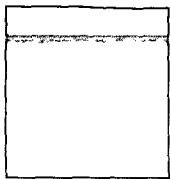
- 자본소득세 가산(저율 20%, 고율 40%)
- 기지급세액 차감
- 미지급세액 합산

#### 참고문헌

최준욱, 『영국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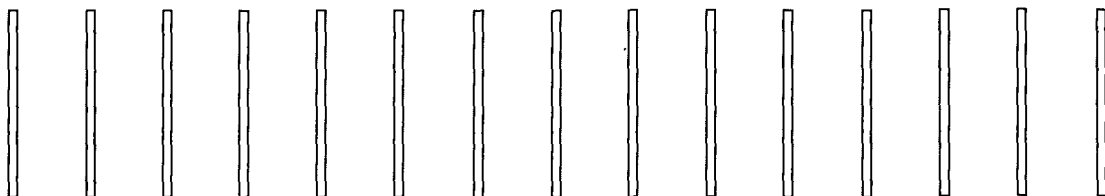
CCH Editions limited, *British Master Tax Guide, 1989-99*.

Inland Revenue, <http://www.inlandrevenue.gov.uk/home.htm>



# 정책흐름

1. 「세금·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2.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3.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1999년 귀속 -
4.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세금 · 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

※ 이 자료는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 재정1팀에서 2000년 4월 4일에 발표한 「세금 · 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의 전문입니다.

## I.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인터넷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편의 제고 및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각종 세금 · 공과금을 납부자가 은행 등 수납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회사나 가정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고지 · 납부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시행대상 :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 학교 수업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 · 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약 165조원)

□ 시행방식

○ 고지방식 :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고지  
 - 전기 ·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터넷 고지를 7월부터 시행하고  
 - 국세 및 지방세는 전자인증방법이 기술적 · 제도적으로 확립된 이후 추진 (관계법령은 연내에 개정)

○ 납부방식 : 인터넷사이트(또는 홈페이지), 펌뱅킹(또는 홈

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다양화

□ 납부시행시기

- 2000년 4월 : 지방세(서울시), 전화요금
- 2000년 7월 : 교통범칙금, 대학수업료, 전기요금, 서울시 상수도 요금
- 2001년 1월 : 국세 · 지방세 전반, 중고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 이와 같이 세금 · 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시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데

○ 우선 납부자인 국민입장에서는

-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편의 제고와
- 현금 납부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 \*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유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소요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만 감안하더라도 최소 6,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추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 납세영수증 보관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됨.

○ 징수기관에서는

- 장표이송, 장표확인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고지서 인쇄·송달에 따른 발송비용이 절감됨.
- ※ 인터넷 고지·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경비 절감액(제도 이용 비율 30% 가정시)
- 현행 징수비용과 비교시 : 600억원 수준
- 은행수납수수료가 현실화(건당 300원)되는 경우와 비교시 : 1,000억원 수준
- 은행측에서는 창구수납에 따른 실제 인건비 소요를 감안 건당 1,500원 수준으로 인상 요구중에 있으며 최소한 3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은행 등 수납 금융기관에서는

- 현재 징수기관으로부터 받는 수납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발생하는 적자요인이 감소되어 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 도입시 비용 절감 효과〉

	현행	인터넷 납부
• 은행수납수수료	• 지로납부비용 : 면제 또는 40원 이내(수수료 현실화시 300원 수준)	• 전산망 이용료 등 : 100원 이내
• 고지비용	• 인쇄·송달비용 : 300~400원 수준	• 미발생(전자메일 활용) • 다만, 초기 시스템 투자 및 개발비는 소요

- 기획예산처는 공공분야에서 정보화를 선도하고, 많은 기대 효과가 예상되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 징수기관별로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자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같이 시행토록 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터넷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999년 국내 도메인 등록수는 1998년 대비 691%, 인터넷 이용자수는 250% 증가
- 물류, 금융, 입찰 등 각 부문의 전자상거래도 확산

〈연도별 인터넷 도메인 및 이용자수 추이〉

(단위: 개,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
도메인수	579	2,664	8,045	26,166	207,023	297,909
이용자수	366	731	1,634	3,103	10,860	12,970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인터넷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제세공과금 인터넷 고지·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분야에서 정보화를 선도
- 납부방식 다양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 제세공과금 징수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
-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등 문서없이(Paperless)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 이행하여 전자정부 조기 구현

2. 현황

- 현재 대부분의 제세공과금이 일부 자동납부를 제외하고는 납부자가 직접 수납대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
- 고지서는 우편, 인편, 통반장 체계를 이용하여 송부
- 이에 따라 납부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고지서 미송달 또는 지연송달로 인한 재발송 부담 및 송달 착오에 따른 연체금 면제 요구 등 민원 빈발
- 또한 징수기관에서는 인쇄 송달경비가 발생하고, 고지서

(납입서)의 분류, 장표 이송 등 징수경비 과다 발생

납부 방식	
①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 자동이체 일부실시(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li> <li>• 200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일부에 대해 전자신고 도입예정</li> </ul>
②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 자동이체 실시</li> <li>• 일부지자체(29개)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실시</li> </ul>
③ 범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li> </ul>
④ 대학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li> <li>• 인터넷, 폰뱅킹납부(서울대)</li> </ul>
⑤ 공공요금 (전기·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자동이체 실시</li> <li>• 신용카드납부 제한적으로 실시</li> </ul>
⑥ 사회보험료 (국민연금·의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납부</li> <li>• 자동이체 실시</li> </ul>

### 3. 시행방안

- 제세공과금 전반에 대해 인터넷 고지·납부제도를 도입
  -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1년에 전면 시행
-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인터넷 고지·납부제도 이용 활성화 유도
- 시행방식 및 대상
  - 고지방식 :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고지
  - 공공요금 등은 인터넷 고지를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국세 및 지방세는 전자인증방식이 기술적·제도적으로 확립된 이후 추진 (관계법령은 연내에 개정)
  - \* 국세기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51조의 2 개정 등
  - \*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령에 전자인증제도 신설
  - 납부방식 : 인터넷사이트(또는 홈페이지), 펌뱅킹(또는 홈

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다양화  
 - 다만 신용카드 활용은 수수료 부담문제를 감안, 시행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시행대상 :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 학교 수업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 일체
- 인터넷 고지·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징수비용 절감액을 환

(단위: 억원)

해당기관	납부대상	대상금액
국세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전반	754,772
행자부 (서울시)	지방세 전반, 상수도요금 등	535,491 (99,238)
경찰청	교통 범칙금	2,775
교육부	대학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등	53,727
한국통신	전화요금	100,000
한 전	전기요금(주택용)	80,000
국민연금 관리공단	연금보험료	85,411
의료보험 관리공단	의료보험료	36,094
계		1,648,270 (1,212,017) <sup>1)</sup>

주: 1) 지자체 중 서울시만 포함

- 용하여 기관별로 이용자 부담 경감방안 강구
- (예) 전기·전화요금 등은 자동이체시 요금의 일부(예:1%)를 납부금액에서 공제
- 시행시기
  -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가 이미 갖추어진 기관은 4월부터 시행
  - 제도 도입을 준비중인 기관은 상반기중 준비완료 후 7월부



터 시행

균근무시간)×건당소요시간(1시간)×연간수납  
건수(177백만건)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전산망 정비,  
수납장표 정보화 등의 사전준비 소요기간을 감안 2001년 1  
월부터 추진

○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 납세영수증 보관(5년간)문제 등  
으로 인한 민원해소

○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연내에 법령  
개정을 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

□ 수납처리비용, 고지서 송달 등 행정비용 절감

○ 신용카드납부방법은 시행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

○ 장표이송(수납점→본점→주거래은행→징수기관), 장표확  
인 등 과도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시 기	시행대상	해당기관
2000년 4월	• 지방세 전반(서울시), 전화요금 납부	서울시, 한국통신
2000년 7월	• 납부 : 교통범칙금 서울시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 경찰청,
	• 고지·납부 : 대학수업료, 전기·전화요금	교육부, 한전, 한국통신
2001년 1월 <sup>1)</sup>	• 고지·납부 : 국세 전반, 지방세 전반 <sup>2)</sup> , 서울시 상수도요금, 중고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행정부, 국세청, 교육부, 서울시, 의료보험, 국민연금

○ 고지서 인쇄·송달문제가 해결되어 송달인력 및 우편료  
등 발송비용 절감

※ 인터넷 고지·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경비 절감액(제  
도 이용 비율 30% 가정시)

• 현행 징수비용과 비교시 : 600억원 수준  
• 은행수납수수료가 현실화(건당 300원)된 경우와 비교시 :  
1,000억원 수준

\* 은행측에서는 창구수납에 따른 실제 인건비소요를 감안,  
건당 1,500원 수준으로 인상 요구중에 있으며 최소한 300  
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큼.

주: 1) 조세(국세·지방세)의 전자인증방법이 기술적인 준비문제로 지연되는 경우 조세의  
인터넷 고지시기는 신속적으로 조정  
2) 서울시 이외의 지자체는 준비가 갖추어진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1년중  
전면 도입

진

※ 한국통신, 한전,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부터 추진

□ 은행 등 수납금융기관의 수지개선에 기여

4. 기대효과

□ 납세영수증 보관 불필요 등 납부자의 편의 제고

○ 징수기관이 지급하는 수납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초래되는 금융기관의 적자요인 해소

○ 현금납부에 따른 납부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유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소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만 감안하더라도 최소  
6,700억원의 비용 절감 추정

· 산출근거 : 시간당 평균임금(3,787원, 1인당GNP/연간평

<참고> 현행방식과 인터넷 납부제도 비용 비교

① 징수비용은 수납수수료 및 고지비용(인쇄·송달)으로 구성

- 현재 각종 제세공과금의 수납수수료는 면제 또는 건당 100원 미만

- 고지비용(인쇄·송달)은 300~400원 수준

②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시 전자고지 및 납부비용이 건당 100원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 현행방식 기준으로 건당 300원, 은행이 수납수수료를 인상(건당 300원)할 경우 건당 500원 수준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

	현행	인터넷 납부
• 은행수납수수료	• 지로납부비용 : 면제 또는 40원 이내 (수수료 현실화시 300원 수준)	• 전산망 이용료 등 : 100원 이내
• 고지비용	• 인쇄·송달비용 : 300~400원 수준	• 미발생(전자메일 활용) • 다만, 초기 시스템 투자 및 개발비는 소요

#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이 자료는 국세청 조사1과에서 2000년 4월 7일에 발표한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중심의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의 전문입니다.

## I. 1/4분기 국제거래 및 벤처자금 유용 기업 등에 대한 調査方向

- 국세청은 稅負擔 衡平性을 제고하고 國家財政收入 확보를 위해 陰性·脫漏所得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 금년 1/4分期에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國際去來를 이용한 탈세행위, 去來秩序 문란행위자 및 벤처 支援資金을 받아 流用한 업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음.
- 國際去來에 대한 調査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제해 온 측면이 있으나
- 최근 국내기업의 國際去來 規模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99년도말 현재 해외진출 기업이 9,414개에 投資金額이 224억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의 國際化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2001년 1월부터는 국제적 범죄자금·자금세탁 등 국제평화질서를 위배하는 거래 이외의 모든 外換去來가 完全自由化됨에 따라 國富의 불법적인 海外流出이 우려되며

- 이에 따라 國際去來를 이용한 탈세행위나 호화사치 생활 등으로 社會的 違和感을 조성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신용카드 使用 義務化, 신용카드 福券制 실시, 카드깡 등 不法的인 신용카드 거래 강력규제 등으로 과세자료가 많이 노출되고 있으나
- 탈세를 源泉的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去來秩序 確立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流通過程 調査를 지속적으로 실시되 탈루혐의가 큰 去來形態, 特定業種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였음.
- 정부는 우리 경제의 活路를 벤처기업 육성에 두고 創業資金 지원, 稅務調査 면제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 ※ 벤처企業에 대한 稅政支援 內容
  -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 창업 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 배제
  -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의 출처조사 배제
  - 납기 연장,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신속처리 등 지원
  - ➡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부 업체는 國民의 稅金으로 조성한 자금을 不法的인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本來의 目的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 지원자금 유용 혐의가 짙은 小數 業體를 屢次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脫漏稅金을 추징하였음.

## II. 國際去來 및 벤처資金 流用 企業 등에 대한 陰性 · 脫漏 調査實績

### □ 調査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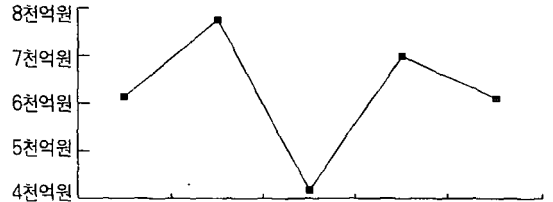
- 지난 1/4分期 동안 음성 · 탈루소득자 633명에 대한 稅務調査를 실시하여 총 6,108억원의 脫漏稅額을 추징하였는바
- 이는 1999년도 分期別 平均 추징세액 6.255억원에는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나
- 小數를 嚴選하여 강도높게 조사한 결과 1人當 追徵稅額은 965백만원으로 1999년도 1/4분기 442백만원, 1999년도 연간 485백만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명, 억원)

	조사건수	추징세액
계	633	6,108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44	3,052
벤처 지원자금 유용	14	57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152	1,525
호화사치 생활자	28	186
변칙 상속 · 증여행위자	157	594
기타 음성 · 탈루소득자	238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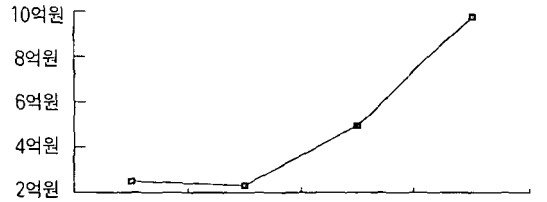
### 〈추징세액 규모〉



(단위: 억원)

연도	1999 1/4분기	1999 2/4분기	1999 3/4분기	1999 4/4분기	2000 1/4분기
추징세액	6,139	7,752	4,128	7,000	6,108

### 〈1인당 추징세액〉



(단위: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1/4분기
1인당 추징세액	2.40	2.22	4.85	9.65

- 한편,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滯脫하거나 去來秩序를 문란케 한 資料商 행위자 등 104명에 대해서는 (관련세금 3,378억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告發措置하였음.

### 〈1/4분기 검찰 고발실적〉

(단위: 명)

계	포탈법	자료상 등
104	7	97



□ 國際去來를 이용한 脫稅者 調査實績

- 外貨流出 혐의자, 僞裝輸出 및 부정환급자, 호화·사치생활자, 海外移住 역유입자, 해외 早期留學生 부모, 거주자인 海外僑胞 등
- 國際去來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총 44명을 조사하여 3,052억원의 脫漏稅額을 추정하였음.

(단위: 명, 억원)

유형	인원	추정세액
계	44	3,052
외화유출 혐의자(수출입가격 조작 등)	15	2,469
해외거래 이용 위장수출 및 부정환급	5	475
호화사치 생활자(해외여행 빈번 등)	9	33
해외이주후 역유입자	2	8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2	7
거주자인 해외교포(금융소득종합과세 미신고자)	4	36
기타(S/W 수입판매자 등)	7	24

- 국제거래를 이용한 主要 脫漏類型別 조사실적
- 稅金計算書 授受 등 去來秩序 紊亂行爲者 調査實績

- 한편, 무자료 거래, 자료상 등 去來秩序 紊亂行爲者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25억원의 脫漏稅額을 추정하였음.

(단위: 명, 억원)

유형	인원	추정세액
계	152	1,525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55	884
자료상 혐의자	97	641

-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主要 脫漏類型別 조사실적
- 벤처企業 支援資金 流用業體 調査實績

- 1999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973개 업체 중 지원자금을 流用한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조사하여
-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追徵하고 不法인 자금지원 및 資金流用이 확인된 9개 업체는 關係機關에 통보할 예정임.

(단위: 개, 백만원)

업체수	지원금액 계	정상사용	불법지원 및 용도의사용	미사용 등
18	12,776	9,344	2,075	1,357

- 조사업체 벤처 支援資金 使用實態

(단위: 개, 백만원)

유형	업체수	유용금액
계	9	2,075
허위서류에 의하여 지원자금 부당 수령	2	810
자금 지원 후 무단 폐업(사주 해외도피)	2	673
금융상품에 투자 등 재테크	1	159
회사채무 상환 등에 사용	4	433

- 關係機關에 通報할 불법 지원자금 수령 및 용도의 사용 유형

### 3. 앞으로의 陰性·脫漏所得者 調査方向

- 국세청은 稅負擔의 衡平性 제고를 위하여
- 전국 21개 2級地 稅務署의 調査課를 廢止하여 지방 中小都市 納稅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大幅 縮小할 방침이며
- 2000년 조사행정의 중점은 國際去來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와 去來秩序 確立에 두고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調査力量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

○ 특히 國際去來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重點 管理하고 있음.

- 국제거래, 海外 現地法人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 신종 국제금융상품, 電子商去來 등에 대한 세원관리
- 해외도박, 낭비성 해외여행 등을 통한 外貨流出者의 탈세행위

○ 누차 천명한 바와 같이 2000年을 去來秩序 確立의 元年으로 삼아 流通秩序 紊亂 정도가 심한 종목과 信用卡도 不實 去來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질서가 正常化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調査를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자료상 행위자 등이 발행한 僞裝·架空稅金計算書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去來相對方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査察에 告發하는 등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임.

○ 앞으로도 中小企業의 육성과 尖端技術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벤처기업에 대한 稅政支援은 계속해 나갈 것이나

- 지원받은 자금을 技術開發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재테크로 用途外에 使用하는 불건전한 벤처기업과
- 豪華奢侈 생활을 일삼는 벤처 企業家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1999년 귀속 -

※ 이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2000년 4월 19일에 발표한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1999년 귀속-」의 전문입니다.

### I. 今年度 標準所得率 調整方向

- 세정지원이 필요한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작년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표준소득률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등
-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지난해 매출액이 급증한 이동통신 관련업종,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호황을 누린 인터넷·컴퓨터 관련업종 및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았던 업종 등에 대한 율수준 인상
- 사업실상에 맞는 업종분류체계 개편
- 그간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동이 있었던 종목 및 법령개정

으로 인하여 율수준 조정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문제점 보완

### II. 標準所得率 率水準 調整原則

#### 1. 率水準 調整基準

-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부도 자료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 요인을 서면분석
- 종목별 서면분석 결과와 각 계 건의사항을 중점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2. 率水準 調整幅

-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
- 업종분류의 개편이나 법령개정 등으로 실소득 수준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0% 범위 조정

### 3. 調整內容 總括

업종수		울수준 조정종목수		
현행	조정후	계	인하	인상
900	904	98	69	29

주: 신설 5종목, 통합 1종목

### Ⅲ. 率水準 引下類型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 저인망, 유자망, 해면어류양식 등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
  - 개인마춤 양복, 식품품 및 일용잡화소매(구멍가게), 당구장, 곡물제분 등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
  - 어육 및 유사제품, 기타 마직물 외, 노트·앨범 등
- IMF의 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업종

- 면 및 마방직, 방모사, 인견직물 등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 석제품 제조, 일반건축공사 등
- 기타 전반적 불황을 겪은 업종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울수준 변경 업종 등
  - 읍셋 인쇄업, 물품취급장비, 다단계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자동차 부분정비업, 화장품 외판원 등
- 안마시술소에 대한 장애인 경감률 적용 배제 규정 삭제
  - 다른 업종이 모두 장애인 경감율이 적용되므로 형평도모

### Ⅳ. 率水準 引上類型

- 경제·사회활동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에 대한 울수준 인상
  - 골프용구, 프랜차이즈 음식점, 피부·비만관리업 등
-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 이동통신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종 등
- 사용이 대중화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컴퓨터·인터넷 관련 업종
  - 통신판매, 컴퓨터 제조, 전자관 등
-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 누락액이 많은 업종
  - 림싸롱, 단란주점, 변호사 등



## V. 業種分類體系 改編

□ 업종분류체계 보완사항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전체종목	조정안	통합종목	신설·분리종목
900	904	△1	5

○ 통·폐합 및 분리·신설

○ 주요 신설·분리업종 및 적용기준 명시종목

- 산후조리원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930912, 44%)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서적외판원(940906)을 보험모집인과 분리한 후 기타외판원(940908)과 통합하여 율수준 신설(24.0%)

• 코드번호 940908 중 기타 모집수당은 현행 율수준을 유지하여 코드번호 신설

- 백화점(521910)에서 대형할인점 분리 규정

○ 사업실상을 반영한 업종분류체계 개편

- 기타 음식점업 중 간이음식점(552109)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

-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을 고급다방(552304)에 포함하도록 명시

- 운동설비운영업(924301)을 체육계열 시설학원(809003)에 통합

-버섯시설작물생산업(154904)을 기타식료품제조업(154909)에서 분리

### 〈참고자료〉

가.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업종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저인망	051101	4.1	3.9	5
• 유지망 외	051102	3.7	3.5	5
• 트롤	051103	4.8	4.6	5
• 인강망 외	051104	4.7	4.5	5
• 해면어류 양식	052102	6.1	5.8	5
• 내수면 양식	052103	9.9	9.4	5
• 생선(법정도매시장)	512234	3.0	2.7	10
•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512235	2.7	2.4	10
•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512236	3.7	3.3	10
•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21.1	19.0	10

주: 현행은 1998년 귀속, 조정은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임(이하 같음)

산업 관련업종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개인마출 양복·양장	181101	12.5	11.3	10
•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522079	6.9	6.6	5
• 가전제품	523321	7.2	6.8	5
• 고급가전제품 외	523324	12.0	11.4	5
• 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 외	526002	10.2	9.7	5
• 당구장 외	924302	34.6	31.1	10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혼합 조제분말 외	153101	11.4	10.8 5
• 곡물제분 외	153103	8.2	7.8 5
• 장 류	154502	8.9	8.5 5
• 임가공 도축 외	154803	12.2	11.6 5
• 인삼, 茶類 등 가공업	154901	10.8	10.3 5
• 임사, 임직 외	193001	6.8	6.5 5
• 유리제품	523422	12.1	11.5 5
• 벽지 외	523910	10.3	9.8 5
• 고철, 폐품	524091	4.0	3.8 5
• 포장 및 충전업	749500	13.3	12.6 5
• 세탁업	930100	16.9	16.1 5

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어육 및 유사제품 외	151200	7.7	7.3 5
• 조제 스프 및 균질화식품	154902	7.2	6.8 5
• 기타 마직물 외	171112	6.3	6.0 5
• 골판지, 종이기방 외	210200	7.2	6.8 5
•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210901	6.3	6.0 5
•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	10.8	10.3 5
• 타이어 재생업	251102	7.6	7.2 5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

□ IMF의 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탄산음료	155401	17.8	16.0 10
• 제사, 견방적, 인건사	171101	5.0	4.8 5
• 면 및 마방적	171102	10.4	9.4 10
• 소모사	171103	8.8	8.4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방 모사	171104	7.4	7.0 5
• 연사	171105	5.7	5.4 5
• 나일론사	171106	13.3	12.0 10
• P.V.C 사류	171107	8.0	7.6 5
• 아크릴사 외	171108	9.5	9.0 5
• 인건직물 외	171109	5.1	4.8 5
• 천연착색제 및 유연제 외	241106	9.6	9.1 5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업종 등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석제품 제조	269601	9.0	8.6 5
• 일반건축공사	451101	8.8	8.4 5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451102	11.3	10.7 5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451103	19.8	18.8 5
• 철근	514210	10.3	9.8 5
• 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3	38.0	36.1 5
• 점포(자기담)	701201	70.0	66.5 5
• 건축사	742103	34.2	30.8 10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낙농·육우사육 외	012101	4.0	3.8 5
• 산란계, 육계	012202	5.2	4.7 10
• 망간, 연 외	132002	5.7	5.4 5
• 버섯시설작물 생산업	154904	12.3	9.8 20
• 고급양화	192002	23.7	22.5 5
• 경인쇄 외	222102	7.6	6.8 10
• 물품취급장비	291502	9.4	8.9 5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고급 가구	361004	13.0	12.4	5
· 자동차 부분 정비업	502002	16.9	16.1	5
· 기 성 화	523241	11.9	11.3	5
·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	525200	20.0	18.0	10
· 정기노선화물차	602301	8.4	8.0	5
· 온라인정보 제공업	724000	34.6	27.7	20
· 운동설비 운영업	924301	27.2	23.1	15
· 음료품 배달원	940907	20.0	19.0	5
· 화장품 외판원 외	940908	30.0	24.0	20

□ 기타

(2) 율수준 인상업종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맥아 · 맥주	155300	16.1	16.9	5
· 마춤 한복	181103	5.7	6.0	5
· 계산기 및 회계기 외	300201	8.1	8.5	5
· 골프, 등산용품 외	369302	10.4	10.9	5
· 운동용품	513941	6.9	7.2	5
· 골프장비 도매	513942	14.3	15.0	5
· 골프장비 소매	523931	16.5	17.3	5
· 프랜차이즈 음식점	552107	22.2	23.3	5
· 탐정 및 경호업	749200	15.7	16.5	5
· 골프연습장 외	924304	44.0	46.2	5
· 피부 · 비만 관리업	930205	35.2	37.0	5
· 서적외판원 외*	940906	20.0	24.0	20

주: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율수준 조정

□ 신종 · 호황업종에 대한 율수준 인상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유선통신 장치 외	322002	9.5	10.5	10
· 통신장비	515060	9.1	10.0	10
· 전 화 기 (휴대폰)	523323	17.7	19.5	10

□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통신판매	525100	13.8	14.5	5
· 비감광성 기록매체	242902	10.0	10.5	5
· 컴퓨터 제조	300100	9.0	9.5	5
· 전자관 외	321000	9.0	9.5	5
· 사무용기기	515050	7.8	8.2	5
· 컴퓨터 소매	523531	12.5	13.1	5
· 컴퓨터 학원 외	809002	17.5	18.4	5
· 전자오락실(PC게임방)	924902	44.0	46.2	5

□ 컴퓨터 · 인터넷 관련 업종

종목명 (코드번호)	현행	조정	조정폭	
				%
· 토지 및 기타부동산임대	701400	77.0	80.0	4
· 료싸롱	552201	54.4	59.8	10
· 단란주점	552207	39.6	41.6	5
· 변호사	741101	52.8	55.4	5
· 중국음식점	552102	18.7	19.6	5
· 서양음식점	552104	20.2	21.2	5

□ 1998귀속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나. 주요 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한가?

-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매일의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 구체적으로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 표본조사결과와 경기변동요인, 사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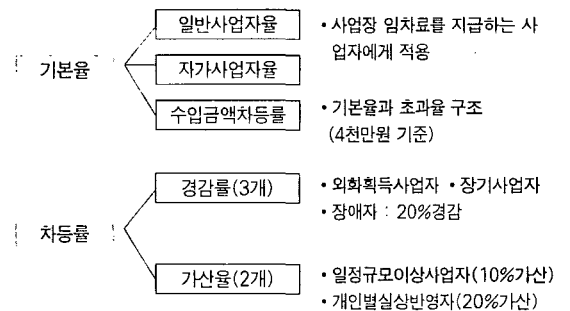
-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세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에는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 또한,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세정지원 등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경감률과 2개의 가산율제도를 두고 있음.





-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문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boxed{\text{수입금액}} \times \boxed{\text{표준소득률}} = \boxed{\text{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임.

- 참고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boxed{\text{수입금액}} - \boxed{\text{필요경비}} = \boxed{\text{소득금액}}$$

[문6]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조정하여 이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였음.
- 반면, IMF 와중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렸던 업종과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은 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조정하였음.

[문7]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 호황을 누린 업종과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 누락금액이 많은 대표적인 불성실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	인하폭
•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	10	5~10
•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사양업종	17	5~10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7	5
• 원자재가 상승, 매출감소 등 수익구조가 악화된 업종	11	5~10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8	5~10
• 기타 불황업종 등으로 인한 인하업종	16	5~20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	인하폭
• 경기호황으로 인한 호황업종에 대한 인상업종	12	5~20
• 최대의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 및 인터넷·컴퓨터 관련업종	11	5~10
•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 누락액이 많은 업종	6	4~10

[문8]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험모집인과 기타 외판원을 구분하고, 기타 모집수당을 새로운 코드로 신설함.
- 전문건설하도급업의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념을 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였음.

○ 종전에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분리

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 지난해 청소년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

(3) 수입금액 차등률

○ 그 동안 적용에 혼선이 많았던 운동설비 운영업 (태권도장, 체육관, 정구장, 탁구장 등)을 체육계열 사설학원과 통합

○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 기타 업종분류에 혼동이 있는 기타 음식점업에 대한 적용 기준을 삭제

○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다. 용어설명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1)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5) 경감률

○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 경감률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감산하는 비율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20%의 경감률을 적용함.

○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

- 외화획득사업자
- 장기계속사업자
- 장애인

### (6) 가산율

○ 가산율은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율로서 다음의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적용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10% 가산)
-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20% 가산)

### (7)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

○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는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하며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자를 말함.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에서 2000년 5월 9일에 발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의 전문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제도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 증권회사 설립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개요, 회사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상황 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
  -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

- 관리계좌)를 허용
- IDB(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
- 자기매매 :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증권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 계열회사간 합병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개선

## 1. 인터넷 공모 등 소액공모시 발행인이 공시해야 할 내용 등 투자자보호조치 규정

- 그 동안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공모)하더라도 그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법인으로 등록은 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하여 왔음.
- 앞으로는 조달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공모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공시토록 함.
- ①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등 공모의 개요



②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 정보) 등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광고, 홍보전단 등의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시 상기내용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소액공모를 하는 발행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 공모를 개시하는 즉시 금감위에 공시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공모를 종료한 때에도 그 결과를 금감위에 통보하도록 함.
  -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금지
  -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함.

## 2. 증권산업 제도개선

- 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2000년 2월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 투자일임형은 증권회사 영업행태 개선 및 시행추이 등을 보아 추후 허용시기 결정
- \* 투자자문형과 투자일임형의 차이점
  - 투자자문형은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문만하고 최종적인 투자판단은 고객이 결정하나 투자일임형은 고객의 예치자산을 증권회사 스스로 투자판단하여 운용하게 됨.
- 증권회사 최저자본금 인하
  - 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 영위시: 현행 300억원 → 200억원
- \* 인수업을 함께 하는 종합증권업: 500억원, 위탁매매전문: 300억원은 현행유지

○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완화

- 현재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영업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록요건 삭제
- \* 법인을 최초설립하면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금지대상주식 확대

- 현재 상장되지 않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가 자유로우나
- 앞으로는 비상장·비등록주식 호가중개시스템(소위 제3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동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를 금지

## 3.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 반영

-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제도 도입
  - 최저설립자본금: IDB(30억원), 채권매매전문증권사(20억원)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능을 증권회사에 허용
  -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토록 증권회사가 중개·주선·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 삭제
-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증권금융의 지원 확대
  -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예치분 운용대상에 '국채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가

#### 4. 일반공모증자제도 개선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  
반공모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발행가액제한을 완화
- 현재 가액결정방식에 의한 경우 가격하락시기에는 사실상  
발행가액이 높아져 공모가 어려운 문제점 해소

현행	개정
○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 - 1개월 증가평균, 1주간 증가평 균, 최근일 증가 중 높은 가격의 90% 이상	○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 - 1개월 증가평균, 1주간 증가평 균, 최근일 증가 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

#### 5. 합병제도 개선

- 현재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  
우(예 :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합병) 합병가액을 합병당사  
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  
문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함.
- \* 통상의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주가(1월간 증가평균, 1주간 증  
가평균, 최근일 증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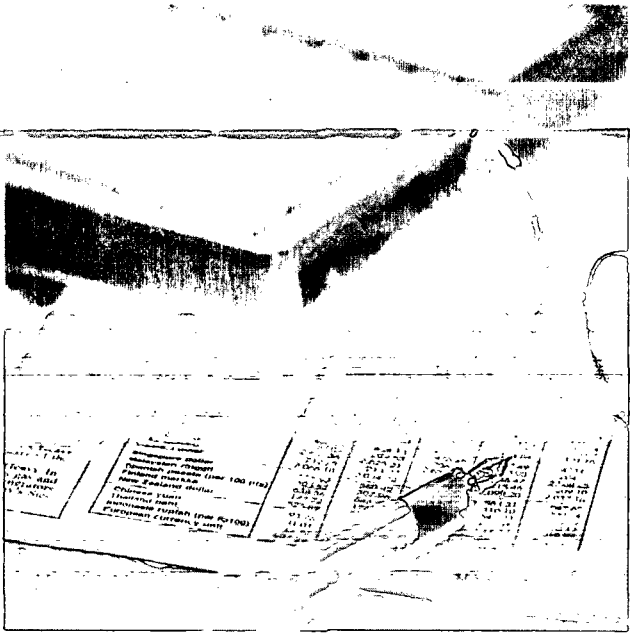
#### 6. 기타 사항

- 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운용대상  
확대
- '국채·지방채·통안증권'을 운용대상에 추가
- \*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결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 공동으로 적  
립하는 기금(2000년 1월 말 현재 적립금 규모: 1,068억원)

- 코스닥시장에 외국법인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대상유가증권에 '외국법인의 원주와 DR'을 추가
- \* 거래소시장은 현재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 상장이 가  
능하고 외국법인의 원주와 DR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사회의 결의(이사총수의 2/3 이상 찬성)를 거쳐 임면하  
며, 당해 회사의 실정에 밝고(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업무독립성(증권업이나 부수업무 등 일선업무를 함께 영위  
하지 못함)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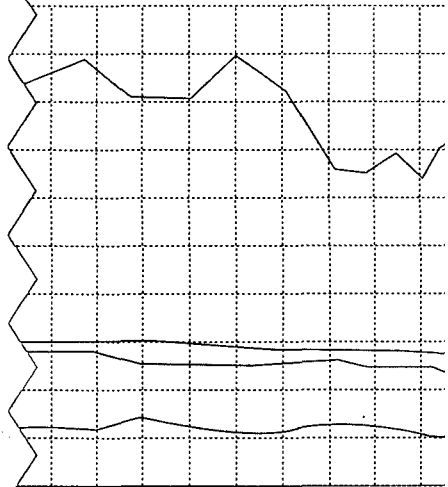
- 기타 금융관계법령 공통사항(내부통제기준 및 증권회사 인  
가기준 등)



# 재정 통계

## ○○○○

1.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2. 국세·지방세의 배분 추이
3.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표 1〉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

(단위: 백만원,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조세 계	금액	112,588	153,033	229,993	313,657	398,056	492,866	522,946	652,626	1,021,659	1,549,76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88,473	129,241	194,288	262,823	334,723	407,683	433,446	521,492	844,673	1,255,479
	구성비	78.6	84.5	84.5	83.8	84.1	82.7	82.9	79.9	82.7	81.0
내국세	금액	70,469	103,828	156,407	218,099	283,799	355,496	374,340	439,121	717,976	1,012,291
	구성비	62.6	67.8	68.0	69.5	71.3	72.1	71.6	67.3	70.3	65.3
교통세	금액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관세	금액	18,003	25,413	37,881	44,724	50,924	52,187	59,106	82,371	126,697	181,004
	구성비	16.0	16.6	16.5	14.3	12.8	10.6	11.3	12.6	12.4	11.7
방위세	금액	-	-	-	-	-	-	-	-	-	62,184
	구성비	-	-	-	-	-	-	-	-	-	4.0
교육세	금액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8,167	10,000	16,400	24,250	30,100	45,372	42,900	57,000	69,000	135,500
	구성비	7.3	6.5	7.1	7.7	7.6	9.2	8.2	8.7	6.8	8.7
지방세	금액	15,948	13,792	19,305	26,584	33,233	39,811	46,600	74,134	107,986	158,790
	구성비	14.2	9.0	8.4	8.4	8.3	8.1	8.9	11.4	10.6	10.2
경상GNP(1억원)		10,370	12,812	16,529	21,553	27,884	34,191	41,935	53,775	75,917	101,292
총조세부담률		10.9	11.9	13.9	14.6	14.3	14.4	12.5	12.1	13.5	15.3
국세부담률 <sup>1)</sup>		9.3	10.9	12.7	13.3	13.1	13.3	11.4	10.8	12.0	13.7
지방세부담률		1.5	1.1	1.2	1.2	1.2	1.2	1.1	1.4	1.4	1.6

주: 1) 1989년까지는 전매익금을 포함한 부담률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조세 계	금액	2,313,313	2,959,257	4,095,513	5,360,748	6,575,391	8,172,352	9,515,641	11,447,94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1,914,747	2,402,682	3,372,262	4,401,708	5,297,700	6,577,938	7,636,435	9,220,718
	구성비	82.8	81.2	82.3	82.1	80.6	80.5	80.3	80.5
내국세	금액	1,370,532	1,675,180	2,252,546	3,037,510	3,675,795	4,595,782	5,250,666	6,188,424
	구성비	59.2	56.6	55.0	56.7	55.9	56.2	55.2	54.1
교통세	금액	-	-	-	-	-	-	-	-
	구성비	-	-	-	-	-	-	-	-
관세	금액	275,512	385,870	646,425	732,294	766,063	890,616	1,012,564	1,463,202
	구성비	11.9	13.0	15.8	13.7	11.7	10.9	10.6	12.8
방위세	금액	268,703	341,632	473,291	631,904	855,842	1,091,540	1,175,335	1,306,032
	구성비	12	12	12	12	13	13.4	12.4	11.4
교육세	금액	-	-	-	-	-	-	197,870	263,060
	구성비	-	-	-	-	-	-	2.1	2.3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구성비	-	-	-	-	-	-	-	-
전매익금	금액	178,000	220,000	280,000	360,000	510,000	680,000	760,000	830,000
	구성비	7.7	7.4	6.8	6.7	7.8	8.3	8.0	7.3
지방세	금액	220,566	336,575	443,251	599,040	767,691	914,414	1,119,206	1,397,226
	구성비	9.5	11.4	10.8	11.2	11.7	11.2	11.8	12.2
경상GNP(1억원)		138,997	177,958	240,627	308,721	368,570	457,029	524,605	620,860
총조세부담률		16.6	16.6	17.0	17.4	17.8	17.9	18.1	18.4
국세부담률 <sup>1)</sup>		15.1	14.7	15.2	15.4	15.8	15.9	16.0	16.2
지방세부담률		1.6	1.9	1.8	1.9	2.1	2.0	2.1	2.3

세정통계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조세 계	금액	12,408,216	13,531,368	15,416,024	18,536,067	22,584,161	26,194,944	33,214,796	38,354,98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10,053,724	11,047,426	12,622,319	15,439,375	18,537,147	21,232,564	26,847,430	30,319,825
	구성비	81.0	81.6	81.9	83.3	82.1	81.1	80.8	79.1
내국세	금액	6,697,373	7,496,925	8,463,984	10,011,971	12,540,239	15,208,394	19,130,227	24,089,183
	구성비	54.0	55.4	54.9	54.0	55.5	58.1	57.6	62.8
교통세	금액	-	-	-	-	-	-	-	-
	구성비	-	-	-	-	-	-	-	-
관세	금액	1,593,959	1,566,125	1,942,560	2,696,464	2,573,562	2,117,581	2,765,371	3,435,489
	구성비	12.8	11.6	12.6	14.5	11.4	8.1	8.3	9.0
방위세	금액	1477565.0	1,663,233	1,843,368	2,319,603	2,911,063	3,483,157	4,430,570	1,263,046
	구성비	11.9	12.3	12	13	13	13	13	3.3
교육세	금액	284827.0	321143.0	372,407	411,337	512,283	423,432	521,262	1,532,107
	구성비	2.3	2.4	2	2	2	2	2	4.0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구성비	-	-	-	-	-	-	-	-
전매익금	금액	846,000	829,000	984,000	904,334	947,045	1,536	-	-
	구성비	6.8	6.1	6.4	4.9	4.2	0.0	-	-
지방세	금액	1,508,492	1,654,942	1,809,705	2,192,358	3,099,969	4,960,844	6,367,366	8,035,159
	구성비	12.2	12.2	11.7	11.8	13.7	18.9	19.2	20.9
경상GNP(1억원)		710,446	793,011	929,093	1,097,265	1,313,713	1,479,416	1,782,621	2,142,399
총조세부담률		17.5	17.1	16.6	16.9	17.2	17.7	18.6	17.9
국세부담률 <sup>1)</sup>		15.3	15.0	14.6	14.9	14.8	14.4	15.1	14.2
지방세부담률		2.1	2.1	1.9	2.0	2.4	3.4	3.6	3.8



〈표 1〉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조세 계	금액	44,680,535	50,286,672	60,492,839	72,090,508	82,354,907	88,560,35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 계	금액	35,218,429	39,260,605	47,261,748	56,774,545	64,960,218	69,927,757
	구성비	78.8	78.1	78.1	78.8	78.9	84.9
내국세	금액	30,080,065	34,174,562	38,449,032	44,381,993	49,202,309	52,153,147
	구성비	67.3	68.0	63.6	61.6	59.7	63.3
교통세	금액	-	-	2,457,167	3,371,752	4,823,970	5,547,122
	구성비	-	-	4.1	4.7	5.9	6.7
관세	금액	3,153,190	2,885,860	3,448,887	4,633,211	5,309,471	5,797,617
	구성비	7.1	5.7	5.7	6.4	6.4	7.0
방위세	금액	162,877	121,280.0	76,696.0	63,137	14,288	-8,464
	구성비	0.4	0.2	0.1	0.1	0.0	0.0
교육세	금액	1,822,297	2,078,903	2,539,578	2,993,104	4,124,152	5,398,538
	구성비	4.1	4.1	4.2	4	5.0	6.6
농어촌특별세	금액	-	-	290,388	1,331,348	1,486,028	1,039,797
	구성비	-	-	0.5	2	1.8	1.3
전매익금	금액	-	-	-	-	-	-
	구성비	-	-	-	-	-	-
지방세	금액	9,462,106	11,026,067	13,231,091	15,315,963	17,394,689	18,632,594
	구성비	21.2	21.9	21.9	21.2	21.1	21.0
경상GNP(1억원)		2,387,046	2,655,179	3,037,726	3,489,793	3,864,380	4,160,180
총조세부담률		18.7	18.9	19.9	20.7	21.3	21.3
국세부담률 <sup>1)</sup>		14.8	14.8	15.6	16.3	16.8	16.8
지방세부담률		4.0	4.2	4.4	4.4	4.5	4.5

〈표 2〉 국세·지방세의 배분 추이

(단위: 백만원, %)

	조세 계		국세 계		지방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65	70,313	100.0	59,103	84.1	11,210	15.9
1966	112,584	100.0	96,636	85.8	15,948	14.2
1967	153,033	100.0	139,241	91.0	13,792	9.0
1968	229,993	100.0	210,688	91.6	19,305	8.4
1969	313,657	100.0	287,073	91.5	26,584	8.5
1970	398,056	100.0	364,823	91.7	33,233	8.3
1971	492,866	100.0	453,055	91.9	39,811	8.1
1972	522,946	100.0	476,346	91.1	46,600	8.9
1973	652,626	100.0	578,492	88.6	74,134	11.4
1974	1,021,659	100.0	913,673	89.4	107,986	10.6
1975	1,549,769	100.0	1,390,979	89.8	158,790	10.2
1976	2,313,313	100.0	2,092,747	90.5	220,566	9.5
1977	2,959,257	100.0	2,622,682	88.6	336,575	11.4
1978	4,095,513	100.0	3,652,262	89.2	443,251	10.8
1979	5,360,748	100.0	4,761,708	88.8	599,040	11.2
1980	6,575,391	100.0	5,807,700	88.3	767,691	11.7
1981	8,172,352	100.0	7,257,938	88.8	914,414	11.2
1982	9,515,641	100.0	8,396,435	88.2	1,119,206	11.8
1983	11,447,944	100.0	10,050,718	87.8	1,397,226	12.2
1984	12,408,216	100.0	10,899,724	87.8	1,508,492	12.2
1985	13,531,368	100.0	11,876,426	87.8	1,654,942	12.2
1986	15,416,024	100.0	13,606,319	88.3	1,809,705	11.7
1987	18,536,067	100.0	16,343,709	88.2	2,192,358	11.8
1988	22,584,161	100.0	19,484,192	86.3	3,099,969	13.7
1989	26,194,944	100.0	21,234,100	81.1	4,960,844	18.9
1990	33,214,796	100.0	26,847,430	80.8	6,367,366	19.2
1991	38,354,984	100.0	30,319,825	79.1	8,035,159	20.9
1992	44,680,535	100.0	35,218,429	78.8	9,462,106	21.2
1993	50,286,672	100.0	39,260,605	78.1	11,026,067	21.9
1994	60,492,839	100.0	47,261,748	78.1	13,231,091	21.9
1995	72,090,508	100.0	56,774,545	78.8	15,315,963	21.2
1996	82,354,900	100.0	64,960,200	78.9	17,394,700	21.1
1997	88,560,300	100.0	69,927,700	79.0	18,632,600	21.0
1998	84,474,400	100.0	67,797,700	80.3	16,676,700	19.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3〉 내국세 세목별 구성의 변천

(단위: 백만원,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70,011	100.0	103,828	100.0	156,407	100.0	218,099	100.0	283,799	100.0	355,496	100.0
직접세 계	33,801	48.3	51,099	49.2	77,702	49.7	110,423	50.6	138,605	48.8	178,456	50.2
소득세	20,305	29.0	30,950	29.8	47,600	30.4	69,609	31.9	84,452	29.8	107,615	30.3
신고분	-	-	-	-	-	-	-	-	-	-	-	-
원천분	-	-	-	-	-	-	-	-	-	-	-	-
법인세	10,882	15.5	15,948	15.4	24,582	15.7	33,122	15.2	42,351	14.9	56,699	15.9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	-
상속세	407	0.6	503	0.5	681	0.4	833	0.4	1,501	0.5	1,967	0.6
상속	77	0.1	175	0.2	263	0.2	370	0.2	870	0.3	1,036	0.3
증여	330	0.5	328	0.3	417	0.3	463	0.2	631	0.2	931	0.3
자산재평가세	334	0.5	724	0.7	800	0.5	870	0.4	716	0.3	1,315	0.4
부당이득세	-	-	-	-	-	-	-	-	-	-	-	-
등록세	1,873	2.7	2,974	2.9	3,995	2.6	5,705	2.6	7,153	2.5	8,358	2.4
부동산투기억제세	-	0.0	-	-	44	0.0	284	0.1	2,432	0.9	2,502	0.7
간접세 계	33,671	48.1	49,190	47.4	75,239	48.1	102,932	47.2	141,558	49.9	172,604	48.6
부가가치세	-	-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	-
주세	6,345	9.1	8,105	7.8	11,147	7.1	16,069	7.4	21,741	7.7	27,650	7.8
전화세	-	-	-	-	-	-	-	-	-	-	-	-
증권거래세	21	0.0	46	0.0	33	0.0	76	0.0	80	0.0	63	0.0
영업세	7,282	10.4	11,550	11.1	17,500	11.2	23,031	10.6	31,022	10.9	37,935	10.7
통행세	2,758	3.9	4,907	4.7	6,666	4.3	9,805	4.5	13,402	4.7	17,113	4.8
물품세	10,346	14.8	15,372	14.8	22,223	14.2	30,658	14.1	31,692	11.2	34,891	9.8
직물류세	-	-	-	-	-	-	-	-	10,689	3.8	10,099	2.8
석유류세	3,656	5.2	4,631	4.5	11,366	7.3	14,787	6.8	21,262	7.5	31,757	8.9
전기가스세	2,206	3.2	2,936	2.8	4,068	2.6	5,315	2.4	7,050	2.5	8,176	2.3
입장세	1,056	1.5	1,643	1.6	2,236	1.4	3,191	1.5	4,620	1.6	4,920	1.4
유흥음식세	-	-	-	-	-	-	-	-	-	-	-	-
인지세	1,512	2.2	2,267	2.2	2,606	1.7	3,114	1.4	1,654	0.6	2,400	0.7
과년도수입	1,027	1.5	1,272	1.2	860	0.5	1,630	0.7	1,983	0.7	2,036	0.6

주: 1967년부터는 수입제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374,340	100.0	439,121	100.0	717,976	100.0	1,012,291	100.0	1,370,532	100.0	1,675,179	100.0
직접세 계	175,363	46.8	198,544	45.2	313,072	43.6	380,906	37.6	548,081	40.0	606,710	36.2
소득세	104,697	28.0	123,710	28.2	164,660	22.9	198,619	19.6	319,021	23.3	352,715	21.1
신고분	-	-	-	-	-	-	-	-	135,159	10	154,900	9
원천분	-	-	-	-	-	-	-	-	183,862	13	197,815	12
법인세	54,824	14.6	49,779	11.3	110,291	15.4	130,480	12.9	171,172	12.5	234,955	14.0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	-
상속세	1,529	0.4	1,828	0.4	2,825	0.4	10,795	1.1	9,904	0.7	10,741	0.6
상속	955	0.3	877	0.2	1,601	0.2	4,234	0.4	5,687	0.4	4,917	0
증여	574	0.2	951	0.2	1,224	0.2	6,561	0.6	4,217	0.3	5,824	0
자산재평가세	1,429	0.4	1,041	0.2	2,421	0.3	5,077	0.5	7,881	0.6	7,746	0.5
부당이득세	-	-	-	-	833	0	226	0	85	0	553	0
등록세	12,078	3.2	21,641	4.9	30,618	4.3	33,491	3.3	40,018	2.9	-	-
부동산투기억제세	806	0	545	0	1,424	0.2	2,218	0.2	-	-	-	-
간접세 계	186,589	49.8	229,539	52.3	383,745	53.4	568,652	56.2	769,648	56.2	1,028,015	61.4
부가가치세	-	-	-	-	-	-	-	-	-	-	241,573	14
특별소비세	-	-	-	-	-	-	-	-	-	-	99,865	6
주세	28,115	7.5	34,039	7.8	53,245	7.4	81,422	8.0	93,020	6.8	123,249	7.4
전화세	-	-	-	-	5,261	1	9,764	1	13,829	1	20,328	1
증권거래세	-	-	-	-	-	-	-	-	-	-	-	-
영업세	48,736	13.0	59,773	13.6	97,040	13.5	198,163	19.6	261,404	19.1	207,852	12.4
통행세	14,551	3.9	21,831	5.0	14,164	2.0	16,868	1.7	21,262	1.6	15,050	0.9
물품세	36,882	9.9	50,117	11.4	79,432	11.1	117,639	11.6	166,422	12.1	132,020	7.9
직물류세	8,081	2	8,078	2	13,479	2	22,623	2	54,056	3.9	43,906	2.6
석유류세	34,818	9.3	37,438	8.5	103,091	14.4	106,724	10.5	142,276	10.4	101,950	6.1
전기가스세	9,953	2.7	12,218	2.8	8,877	1.2	5,104	0.5	6,038	0.4	16,048	1.0
입장세	5,453	1.5	6,045	1.4	9,156	1.3	10,345	1.0	11,341	0.8	7,296	0.4
유흥음식세	-	-	-	-	-	-	-	-	-	-	18,878	1
인지세	7,855	2.1	8,293	1.9	13,709	1.9	12,772	1.3	14,603	1.1	19,328	1.2
과년도수입	4,533	1.2	2,745	0.6	7,450	1.0	49,961	4.9	38,200	2.8	21,127	1.3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2,252,546	100.0	3,037,510	100.0	3,675,795	100.0	4,595,782	100.0	5,250,666	100.0	6,188,424	100.0
직접세 계	842,036	37.4	1,124,965	37.0	1,178,835	32.1	1,546,662	33.7	1,879,903	35.8	2,092,763	33.8
소득세	467,759	20.8	614,679	20.2	661,374	18.0	886,150	19.3	1,005,516	19.2	1,136,116	18.4
신고분	258,817	11	286,280	9	298,758	8	314,718	7	373,703	7	436,041	7
원천분	208,942	9	328,399	11	362,616	10	571,432	12	631,813	12	700,075	11
법인세	358,715	15.9	493,207	16.2	485,206	13.2	594,062	12.9	781,303	14.9	863,691	14.0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	-
상속세	8,744	0.4	6,583	0.2	9,623	0.3	26,216	0.6	35,454	0.7	42,662	0.7
상속	3,799	0.2	2,240	0.1	2,913	0.1	11,975	0.3	17,889	0.3	18,107	0
증여	4,945	0.2	4,343	0.1	6,710	0.2	14,241	0.3	17,565	0.3	24,555	0
자산재평가세	6,763	0.3	10,389	0.3	22,418	0.6	40,178	0.9	57,629	1.1	50,293	0.8
부당이득세	55	0	107	0	214	0	56	0	1	0	1	0
등록세	-	-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	-
간접세 계	1,382,837	61.4	1,873,439	61.7	2,403,957	65.4	2,916,841	63.5	3,260,133	62.1	3,922,154	63.4
부가가치세	838,907	37	1,088,675	36	1,471,194	40	1,804,760	39	2,094,383	40	2,559,277	41
특별소비세	327,021	15	484,627	16	582,471	16	665,204	14	664,874	13	793,315	13
주세	193,989	8.6	265,848	8.8	297,717	8.1	374,761	8.2	394,708	7.5	441,027	7.1
전화세	22,920	1	30,972	1	49,996	1	66,739	1	101,574	2	123,775	2
증권거래세	-	-	3,317	0.1	2,579	0.1	5,377	0.1	4,594	0.1	4,760	0.1
영업세	-	-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	-
유홍음식세	-	-	-	-	-	-	-	-	-	-	-	-
인지세	24,897	1.1	37,317	1.2	33,890	0.9	49,678	1.1	54,227	1.0	64,212	1.0
과년도수입	2,776	0.1	1,789	0.1	59,113	1.6	82,601	1.8	56,403	1.1	109,295	1.8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6,697,372	100.0	7,496,924	100.0	8,463,984	100.0	10,011,971	100.0	12,540,239	100.0	15,208,395	100.0
직접세 계	2,234,725	33.4	2,671,368	35.6	3,046,378	36.0	3,924,458	39.2	5,353,473	42.7	6,897,428	45.4
소득세	1,229,093	18.4	1,481,558	19.8	1,784,559	21.1	2,158,867	21.6	2,964,061	23.6	3,556,892	23.4
신고분	453,748	7	526,922	7	625,905	7	717,651	7	984,183	8	1,299,917	9
원천분	775,345	12	954,636	13	1,158,654	14	1,441,216	14	1,979,878	16	2,256,975	15
법인세	923,535	13.8	1,126,731	15.0	1,191,401	14.1	1,682,444	16.8	2,247,429	17.9	3,107,894	20.4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	-
상속세	47,065	0.7	46,387	0.6	64,369	0.8	69,695	0.7	109,260	0.9	142,971	0.9
상속	19,946	0.3	17,821	0.2	33,382	0.4	32,724	0.3	36,007	0.3	39,472	0
증여	27,119	0.4	28,566	0.4	30,987	0.4	36,971	0.4	73,253	0.6	103,499	1
자산재평가세	35,032	0.5	16,686	0.2	6,049	0.1	13,452	0.1	32,723	0.3	89,671	0.6
부당이득세	-	-	6	0	-	-	-	-	-	-	-	-
등록세	-	-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	-
간접세 계	4,256,193	63.6	4,556,995	60.8	5,127,914	60.6	5,735,751	57.3	6,852,269	54.6	8,063,177	53.0
부가가치세	2,704,272	40	2,901,197	39	3,272,210	39	3,650,479	36	4,205,215	34	5,260,229	35
특별소비세	898,110	13	980,807	13	1,085,500	13	1,189,665	12	1,333,176	11	1,256,966	8
주세	493,393	7.4	501,187	6.7	555,805	6.6	581,501	5.8	780,470	6.2	893,033	5.9
전환세	153,936	2	166,551	2	195,463	2	235,737	2	283,462	2	237,437	2
증권거래세	6,482	0.1	7,253	0.1	18,936	0.2	78,369	0.8	249,946	2.0	415,512	2.7
영업세	-	-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	-
임장세	-	-	-	-	-	-	-	-	-	-	-	-
유형음식세	-	-	-	-	-	-	-	-	-	-	-	-
인지세	68,840	1.0	75,670	1.0	83,529	1.0	99,772	1.0	120,692	1.0	162,305	1.1
과년도수입	137,614	2.1	192,891	2.6	206,163	2.4	251,990	2.5	213,805	1.7	85,484	0.6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19,130,227	100.0	24,089,183	100.0	30,080,065	100.0	34,174,562	100.0	38,449,032	100.0	44,381,993	100.0
직접세 계	8,340,457	43.6	11,627,276	48.3	14,573,333	48.4	16,413,477	48.0	19,645,246	51.1	23,427,270	52.8
소득세	4,723,114	24.7	6,459,371	26.8	8,008,357	26.6	9,462,850	27.7	11,207,767	29.1	13,618,190	30.7
신고분	2,017,230	11	2,618,269	11	2,758,288	9	3,605,127	11	4,118,855	11	4,676,602	11
원천분	2,705,884	14	3,841,102	16	5,250,069	17	5,857,723	17	7,088,912	18	8,941,588	20
법인세	3,226,128	16.9	4,585,547	19.0	5,941,051	19.8	5,862,329	17.2	7,387,568	19.2	8,662,631	19.5
토지초과이득세	-	-	190,171	1	121,776	0	322,626	1	56,085	0	27,969	0
상속세	295,933	1.5	326,201	1.4	433,273	1.4	667,167	2.0	907,420	2.4	1,029,374	2.3
상속	71,033	0.4	104,372	0.4	175,030	0.6	346,337	1.0	523,570	1.4	605,644	1
증여	224,900	1.2	221,829	0.9	258,243	0.9	320,830	0.9	383,850	1.0	423,730	1
자산재평가세	95,282	0.5	65,899	0.3	68,876	0.2	98,505	0.3	86,406	0.2	89,105	0.2
부당이득세	-	-	87	0	-	-	-	-	-	-	1	0
등록세	-	-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	-
간접세 계	10,384,159	54.3	12,085,207	50.2	15,000,208	49.9	17,368,638	50.8	18,192,059	47.3	20,124,203	45.3
부가가치세	6,964,419	36	8,252,627	34	10,076,296	33	11,687,506	34	13,057,973	34	14,636,893	33
특별소비세	1,911,791	10	2,246,526	9	3,068,615	10	3,606,917	11	2,445,573	6	2,617,110	6
주세	1,022,417	5.3	1,145,342	4.8	1,329,041	4.4	1,367,588	4.0	1,545,787	4.0	1,824,513	4.1
전환세	261,522	1	311,387	1	360,431	1	399,722	1	458,696	1	543,051	1
증권거래세	224,010	1.2	129,325	0.5	165,825	0.6	306,905	0.9	684,030	1.8	502,636	1.1
영업세	-	-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	-
진기가스세	-	-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	-	-	-
인지세	193,077	1.0	224,223	0.9	214,983	0.7	242,619	0.7	275,300	0.7	319,829	0.7
과년도수입	212,534	1.1	152,477	0.6	291,541	1.0	149,828	0.4	336,427	0.9	510,691	1.2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원, %)

	1996		1997		19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49,202,309	100.0	52,153,147	100.0	51,237,792	100.0
직접세 계	25,319,879	51.5	25,620,082	49.1	29,111,751	56.8
소득세	14,766,882	30.0	14,867,893	28.5	17,194,021	33.6
신고분	4,954,990	10.1	5,022,125	9.6	4,006,790	7.8
원천분	9,811,892	19.9	9,845,768	18.9	13,187,231	25.7
법인세	9,356,104	19.0	9,424,669	18.1	10,775,797	21.0
토지초과이득세	13,689	0.0	-841	0.0	5,094	0.0
상속세	966,530	2.0	1,161,147	2.2	679,631	1.3
상속	565,773	1.1	604,660	1.2	309,488	0.6
증여	400,757	0.8	556,487	1.1	370,143	0.7
자산재평가세	216,674	0.4	167,214	0.3	457,208	0.9
부당이득세	-	-	-	-	-	-
등록세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간접세 계	22,943,240	46.6	25,364,720	48.6	20,897,047	40.8
부가가치세	16,789,539	34.1	19,487,991	37.4	15,706,805	30.7
특별소비세	3,119,253	6.3	3,036,442	5.8	2,211,453	4.3
주세	2,083,563	4.2	1,789,791	3.4	1,814,408	3.5
전화세	661,012	1.3	788,624	1.5	921,887	1.8
증권거래세	289,573	0.6	261,872	0.5	242,494	0.5
영업세	-	-	-	-	-	-
통행세	-	-	-	-	-	-
물품세	-	-	-	-	-	-
직물류세	-	-	-	-	-	-
석유류세	-	-	-	-	-	-
전기가스세	-	-	-	-	-	-
암장세	-	-	-	-	-	-
유홍음식세	-	-	-	-	-	-
인지세	355,970	0.7	390,105	0.7	303,533	0.6
과년도수입	583,220	1.2	778,240	1.5	925,461	1.8